

편의시설을 다시 보기

Md.c.2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편의시설을 다시 보기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A4-12

어렵게 만든 법만큼 본래의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활분야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장애인 자신들이

먼저 이 법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편의시설 다시 보기」의 출판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앞으로 편의시설 및 접근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조일목, 발간사 중에서

‘다시 보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본 것이지만 한 번 더 보자’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보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편의증진법이

시행되는 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이 ‘다시 보는’ 일이 아닐까

— 이계준, 발간사 중에서

생각합니다.

편의시설 다시 보기



편의시설 다시 보기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모임

접근권 확보를 위한 확실한 가이드

조일목 /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이사장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장애인이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진정 우리 사회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equal of opportunity', 즉 모든 문제에 있어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접근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는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난 94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부터 시작하여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만들어지기까지 실로 많은 분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비로소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은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징수라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고 장애인은 고용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의 현실처럼 실질적인 변화와 효과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금년 초 미국 워싱턴의 한 유명극장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미국장애인법(ADA) 위반으로 제소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새삼 미국 장애인들의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건물이나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개인이나 정부기관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노력도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나라에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수용하고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 우리도 이제는 부러워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만든 법만큼 본래의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활분야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장애인 자신들이 먼저 이 법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편의시설 다시 보기」의 출판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앞으로 편의시설 및 접근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책을 장애인 재활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장애인들이 읽고 숙지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또한 관계기관이나 편의시설 설치요원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접근권이 확보되고 보급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시설의 방향 제시하는 작은 발걸음

이계준 /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모임 대표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처음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모임의 일을 시작했을 때, '편의시설'이란 말은 일반 시민들에게 매우 낯선 말이었고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잘 알려진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편의시설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편의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때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권해 줄 만한 책 한 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편의시설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그럼 이 책을 한 번 읽어보세요." 라고 권해 줄 수 있는 책이 필요했습니다.

「편의시설 다시 보기」는 바로 이러한 요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성하고, 저자를 섭외하고,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결실이 열매가 되어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보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본 것이지만 한 번 더 보자'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보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편의증진법이 시행되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이 '다시 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편의시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해 온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와 현실을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며 해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의 표제를 「편의시설 다시 보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동안 시행되었던 정책에 대한 보고도 있고, 건축에 대한 이야기, 교통에 대한 이야기, 주택에 대한 이야기,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신문기사, 그리고 지금까지 편의시설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편의시설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 수도 있으며, '이래서 편의시설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편의시설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편의시설 다시 보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도 아니며, 정책대안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 온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 번 돌아보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진한 부분들은 이후 재판과 중판이 거듭되면서 수정되고 보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리고 부족한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으며, 이 어려운 작업에 끼여 함께 해주신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에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책이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몸으로 펴낸 「편의시설 다시 보기」

김성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 한신대학교 교수

장애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장애는 자신이 입고 있는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장애이다. 사회적 장애 중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정보 생활의 접근을 가로막고 불편하게 하는 사회적 장애도 큰 문제이다. 사실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단지 그 장애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의 차이일 뿐이다.

예를들어 양손에 짐을 들고 문을 열어야 할 경우 그 사람은 그 문에 대해서 두 손이 없는 장애인과 같은 장애를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 자동문이면 장애를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모든 편의시설은 단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해인 1997년에 제정된 법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도 임산부도 그리고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편의시설 설치가 마치 장애인을 위해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그 동안 장애인들의 희생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증진되었고 '편의증진법'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에 편의시설 설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편의시설이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그저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더 불편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미 설치한 곳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종합적인 안내서가 나오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안내서를 펴낸다고 하니 참으로 고맙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책을 출판한 의지와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이 책은 단지 책상 위에서 연구하며 쓴 책이 아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온몸으로 직접 아픔과 장애를 겪으면서 그 체험으로 쓴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은 그 어떤 안내서보다 장애인에게,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의 발간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과 정보접근이 불편함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염원한다.



발간사 · 조일목
 발간사 · 이계준
 추천사 · 김성재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이 주는 의미

김정열

I. 새로운 권리개념 접근권	19
1. 접근권의 근거	19
2. 시민권에서 본 접근권	19
II. 장애인과 접근권	21
III. 청구권으로서의 접근권	22
IV. 우리 사회에서의 접근권 문제	23
V.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 현황	24
1.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24
2. 장애인 교통시설 현황	26
VI.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	28
1. 관련법	28
2. 편의증진법의 제정 과정	29
3. 편의증진법의 주요 내용	29
4. 편의증진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 및 과제	30
5.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중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1998~2002)	31
6. 정보접근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32
VII. 미국 장애인 관련법에 있어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34
VIII.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	35

장애인 편의시설과 건축

강병근

I. 장애인과 접근권	39
II. 장애인 접근권의 현황과 과제	40
1. 관련 법령의 실태와 문제점	40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41
3.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	43
III. 장애인 접근권의 국제적 흐름	
— 독일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란 없었다!	44
IV.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역할	
— 무장애 생활공간의 구현	46
1. 편의시설의 시간 단계별 확충 계획	46
2. 편의시설의 공간 단계별 확충 계획	49
V. 글을 마치며	52
덧붙임 / 소요실별 설계기준 및 지침	55

장애인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

금기정

I. 교통약자의 정의 및 사회적 의미	83
1. 교통약자의 정의	83
2. 장애인을 위한 교통대응의 사회적 의미	84
II.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교통관련) 검토	87
III. 의식조사를 통한 장애인의 특성분석	92
1.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장애 분석(교통수단별)	92
2.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수단별 선호 의식	96
3. 시각장애인의 특성 및 교통수단별 의식	98
IV. 장애인과 교통정보	102
V. 장애인의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운송체계(STS)	105
1. 특별운송체계란?	105
2. 특별운송체계의 고도화	110
VI. 교통분야와 관련된 장애인복지법의 향후 검토내용	110
1. 보행에 관한 기준 검토	111
2. 교통수단에 관한 기준 검토	118
VII. 결론	127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

복지정보통신

홍진우

I. 서론	131
II. 보편적 서비스와 복지정보통신	132
1.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132
2. 보편적 서비스 현황	134
III. 지원기술과 복지정보통신	136
1. 지원기술의 개념	136
2. 복지지원기술의 고려사항	138
3. 복지지원기술의 영역	140
IV.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통신	142
1. 장애인의 정보통신 요구 기능	142
2.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146
V. 국내의 복지정보통신 현황	150
1. 정보통신 이용 및 서비스 현황	150
2. 복지정보통신기기 개발 사례	154
VI. 복지정보통신의 발전전략	158
1. 개발의 효율화	158
2. 이용자를 중시한 기술개발	160
3. 기타 방안	161
VII. 결론	162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주택

김영민

I. 들어가는 말	167
II. 무장애 주택(Barrier Free)의 의미와 역사	167
1. 무장애의 의미	167
2. 무장애의 역사	169
3. 무장애 사회를 위한 네 가지 전망	170
III. 휠체어 생활자가 직접 체험한 무장애 주택	
— 경험적 접근	171
1. 휠체어 생활자를 위한 장래 대응형 주택으로 개조	171
2. 휠체어 생활자가 경험한 무장애 주택을 위한 사고방식	172
3. 휠체어 생활자가 경험한 무장애 주택을 위한 조건	174
4. 휠체어 생활자가 경험한 무장애 주택 설계의 주의사항	176
5. 신축과 주택 개조에서 주의해야 할 점	177
IV. 장수사회 대응 주택설계 지침서 — 법률적 접근 : 일본	178
1. 주택설계지침	178
2. 집안 내 각부	180
3. 공동주택의 옥외공간 및 공용 부분의 설계 지침	182
V. 고령자 주택의 유형론	184
1. 영국의 고령자 주택 형태	184
2. 미국의 고령자 주택 형태	186
VI. 고령자 ·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실천방법론	188
1. 계속되는 계란과 닭의 논리(비용이 아니라 질)	189
2. 사회적 · 경제적 효과	189
3. 주택개조 보조제도의 필요성	190
4. 타 분야 전문가에 대한 기대(팀워크 필요)	191
5. 주택개조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193
6. 화장실 개선방법	194
7. 목욕을 위한 개선방법	199
8. 외출 · 식사 · 취침을 위한 개선 사례	
(복지 · 의료 · 보건 · 건축의 연계)	200
9. 배설 · 목욕을 위한 개선 사례	200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
장애인 주택개조

.....
—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정성진

I.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필요성	205
II.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개요	
—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을 중심으로	206
III.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현황	207
1. 사업연도별 특징	207
2. 평가와 바람	211
IV. 장애인가정 내 편의시설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 사례를 중심으로	212
1. 편의시설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진다	213
2. 자존심이 회복되었다	214
3. 인간답게 살게 되었다	215
4.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217
V. 미국 장애인법에 나타난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	218

.....
모든 사람을 고려한 설계

.....
— **보편적 디자인**

.....
배용호

I. 보편적 디자인의 필요성	231
II. 보편적 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232
1. 보편적 디자인의 정의	232
2. 보편적 디자인의 4가지 기초이념	234
3. 보편적 디자인의 7가지 원칙	237
4. 보편적 디자인의 장점	239
5. 보편적으로 디자인하기 — 디자인의 과정	241
6. 보편적 디자인 적용의 사례	
—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243
III. 결론 — 편의시설 디자인의 8가지 원칙	245
1. 편의시설 디자인의 8가지 원칙	245

.....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
편의증진법의 제정까지

.....
—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흐름

.....
이성재

I. 들어가는 말	251
II.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효시	
— ‘심신장애자복지법’	252
III. 타 관련법들의 개정	253
IV. 장애인복지법에서의 편의시설	255
V.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58
V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59
1. 편의증진법의 제정 과정	259
2. 편의증진법의 내용	262
VII. 앞으로의 과제	264

.....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경위

.....
박을중

I. 들어가는 말	269
II.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추진경위	271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271
2. 편의시설 설치 추진경위	273
III.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정책	280
1.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생활환경 조성	280
2. 건축물 및 설비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281
3.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 및 복지교통 구현	281
4. 다각적인 장애인 편의증진 방안 강구	282
IV. 맺는 말	283

.....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
.....

접근권 운동 I
.....

박옥순
.....

I. 장애인 인권과 접근권 운동	289
1. 장애인 인권보장과 접근권	289
2. 이동권과 접근권	290
3. 접근권 운동의 시작	291
II. 접근권 확보를 위한 사업	292
1. 공대위의 이동권 확보사업	292
2. 녹색교통운동과의 연대	293
3.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조사	295
4.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297
5. 월간 「함께걸음」의 접근권 운동	299
6.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302
7. 장애를 가진 대학생 설문조사	305
8.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심포지움	306
9. 입법활동	307
III.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과제	309

.....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
.....

접근권 운동 II
.....

전정옥
.....

I.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모임의 태동	313
1. 편의시설평가단을 꾸꾸며	313
2. 시민단체로서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모임의 발족	314
3. 편의모임의 활동방향	315
II. 접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운동의 다양화	317
1. 접근권 확보를 위한 여러 단체들의 활동	317
2. 편의모임의 운동	318
III. 편의증진법 시행을 앞두고	325
1. 사회속으로 첫걸음, 이동권과 접근권의 보장	325
2. 편의증진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326
3. 편의증진법 그 시행의 걸림돌	327
4. 인간성을 드높이는 도시를 꿈꾸며(to the Humane City)	328

.....
신문기사를 통해 본
.....

장애인 편의시설
.....

이현준
.....

I. 시작에 앞서	333
II. 편의시설 실태조사	335
III. 장애인과 교통환경	355
1. 장애인을 위한 교통환경 관련기사	355
2. 지하철 안전실태	360
IV.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통신	362
1. 정부의 복지정보통신정책	362
2. 복지정보통신	367
V. 복지서비스	369
1. 전화관련 복지서비스	369
2. 장애인을 위한 항공사 편의서비스와 여행상품	370
VI. 장애인의 재활복지용품 개발 - 기업중심으로	373
1. 점자아이디어 상품	374
2. 점자를 사용한 제품 설명서 및 회사광고	376
3. 장애인 승용차	378
4. 장애인 재활복지용품 및 관련산업	380
VII. 편의시설과 장애인운동	382
1. 접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운동	
- 도시철도 중심으로	382
2. 장애를 가진 대학생 편의시설 확보운동	385
3. 저상버스 확대도입 촉구운동	386
4. 보행약자를 위한 시민단체의 보행권 운동	387

.....
부록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39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40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427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이 주는 의미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I. 새로운 권리개념 '접근권'
- II. 장애인과 접근권
- III. 청구권으로서의 접근권
- IV. 우리 사회에서의 접근권 문제
- V.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 현황
- VI.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
- VII. 미국 장애인 관련법에 있어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 VIII.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

I. 새로운 권리개념 '접근권'

1. 접근권의 근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생존권이나 노동권 또는 보행권, 이동권, 정보권 그리고 접근권 등의 각종 권리개념이 연속해서 도입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호홉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권리에 대해서도 친숙하게 들을 수 있을 때가 곧 다가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어쨌든 접근권(接近權; Right to Access)은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권리개념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의 접근권의 근거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현대국가의 복지원리에 따라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우리 나라에 적용되는 조약이나 선언은 국내법의 효력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1993년 6월 25일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세계대회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며 따라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시민권에서 본 접근권

여기서 말하는 접근권의 이념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민이 인권을 획득하게 된 과정을 시민권의 발전과정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접근권에 대한 이해도 시민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샬(T. H. Marshall)은 시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을 18세기의 공민권(Civil Rights), 19세기의 정치권(Political Rights), 20세기의 사회권(Social Rights)이라는 각 권리의 발달로 특징지으면서, 사회복지의 완전한 구현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¹⁾

18세기의 공민권(公民權)은 소수의 귀족지배계층으로부터의 자유의 개념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획득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의 개념보다는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에 중심가치를 두었다. 반면 19세기의 정치권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정치권(政治權)의 발달로 인해 민주주의는 가능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1인 1표를 행사하는 수적 평등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정치, 경제구조는 산술적 평등은 보장하였으나 분배적 정의라는 관점에서는 불평등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수정은 국민적 합의라는 정당성의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의 구체적 형태가 계층간의 합의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타협을 통해 사회권이 발달하게 되는 동력을 찾을 수 있다.²⁾

장애인의 접근권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이론적 배경 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는 사회권은 적정 수준의 복지 및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물론 마샬이 사회권의 발달과정에서 재료로 삼고 있는 영국의 빈민법, 베버리지 보고서 등은 외형상으로는 사회권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인 성격이 지배하고 있다.³⁾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샬은 사회권의 실재성을 규정하는 척도를 사회불평등의 완화정도, 지위평등의 달성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권의 핵심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창출하여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의 지위를 보장받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사회권적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국가 속에서 기본권 향유의 주체인 국민이 복지에 대한 권리(Right for Welfare)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

1) T.H.Marshall, *Sociology at the Cross Roads and other Essay*, Heinmann, 1963. p.76
 2) 시민권에 대한 개략은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발간)과 '시민권 보장을 위한 사회 입법적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순우, 중앙대 사회복지 석사논문, 1995)를 참고했음
 3) T.H.Marshall, *Social Policy*, Hutchinson & Co.Publishers,LTD. 1972 a. pp. 35-44

무런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이 복지문제가 권리차원에서 이해되는 이상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공동체의 완전한 참여가 국민의 주체적 지위확보를 전제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개념 역시 시민권의 확보라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권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도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장애인에게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의 기회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II. 장애인과 접근권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지욕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과 문화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인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불평등은 차별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장애문제는 복지 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보다는 인권을 기본적인 잣대로 삼아서 다루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된 통합된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통합된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동에 있어서나 건축물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에 접근(Access)이 가능해야 한다.

칸(Alfred J. Kahan)은 접근권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천 4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첫째, 현대의 관료제적 복잡성에 대한 접근권 문제. 둘째, 시민들 간에 권리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 또는 자원, 수혜, 자격에 대한 가치평가의 다양성에 따른 접근권. 셋째, 차별문제에 있어서의 접근권. 넷째, 사람과 서비스 간의 지리적인 거리감에 따른 접근권을 들 수 있다. 접근권에 있어서 광의의 개념은 칸(Alfred J.Kahan)의 복지에 대한 접근권의 4가지 원천과 앞서 밝힌 사회 모든 분야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대중교통에의 접근, 통신이용에 있어서의 접근, 선거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문화유적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체육시설을 이

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들 수 있다.⁴⁾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59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건축장벽(Architectural Barriers)으로 인하여 다수의 장애인의 고용이 저해되고 다수의 장애아동의 교육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여 '공공건축물에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와 구성'이라는 결의를 최초로 하게 되었다. 그후 1968년에 건축장벽철폐법(Architectural Barriers Act)이 제정되고, 1973년에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이 제정되어 동법 504조에 의해 정부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장애인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건축물이 되도록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III. 청구권으로서의 접근권

뱅크스(Gary Banks)는 차별의 문제를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로 나누면서 간접적인 차별의 예로 건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건물에의 접근은 국민의 권리 가운데 하나이고,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권에 대한 개념은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과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건물에의 접근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만약 장애인이 공공건물을 출입하고 이용할 수 없다면 쉽사리 투표도 할 수 없고 정부의 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고 결국 자립이나 자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직장과 일반적인 사업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재능과 시장성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은 자유권을 더욱 더 자유권답게 만들기 위한 권리이며, 사회권을 더욱 더 사회권답게 만

들기 위한 권리고, 대국가적·대사회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시에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체로서도 내용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권리의 성격상

4) 김정열,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96

대국가적 급부청구권에 그치지 않고 대사회적인 청구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⁵⁾

IV. 우리 사회에서의 접근권 문제

장애인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동권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그리고 대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학교도 혼자서 다닐 수 없다. 그래도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는 학교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원할하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장치도 없어 계속해서 수학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등 노약자들은 계단을 올라 다니기가 매우 곤란하다.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경우는 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도로사정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램프시설이 된 곳이 드물다.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만 가지고 혼자 다닐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 도로도 거의 없다. 몇 군데 도로에 램프를 설치하는 하였으나 휠체어가 혼자 다니려면 보도와 도로의 턱 차가 2cm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10cm가 넘는다. 보도블록이 평평하게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은 넘어지기 일쑤다.

서울시청 앞 사거리에는 횡단보도는 없고 지하도만 있다.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구청에도 노약자를 위하여 경사로나 승강기를 설치한 건물은 거의 없다. 편의시설을 갖춘 종교시설도 물론 거의 없다. 휠체어를 들어올리는 장치(휠체어리프트)를 한 버스도 없다. 버스, 택시도 장애인이 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떠나버린다. 지하철, 도시철도도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장치(리프트)와 승강기를 설치한 곳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장애인 혼자 목적지에 접근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렵다.

장애인이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과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통합된 사회가 가능하려면 이동에 있어서나 건축물 그리고 모든 정치, 사회, 문화, 체육 등에서의 접근(Access)이 가능해야 한다. 좀더

5) 강경선,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7주년 기념심포지엄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대중교통에의 접근, 청각장애인의 통신에의 접근, 정치적 기본권인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문화유적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분야에서 장애인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V.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 현황

1.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86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 일부 대형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편의시설 확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대형건물에 한정해서 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는 큰 의미를 주지 못했다.

<표 1>

시·도	조사한 시·군·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설치	미설치
계	34	417	34(8.2%)	383(91.8%)
서울	10	164	18	146
대전	4	54	5	49
경기	20	199	11	188

*감사원자료 1995, 상반기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인 시행이 뒤따르지 못했다.

지난 1995년 1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편

의시설 설치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편의시설 설치규칙에 의하면 공공건물과 종교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건축할 때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공공건물 등은 편의시설 설치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철도역사 등은 10년 이내에 신축 공공건물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편의시설 설치규칙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 시설 중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감사원 조사, 1995, 상반기 현재) 서울, 경기, 대전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8.2%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어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대부분 안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

연도	음향 신호기	횡단보도 유도 바닥재	횡단보도 턱낮추기	장애인용 공중 전화기	장애인용 경사로	장애인용 공중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지하철내 유도 바닥재	기타	계
1985	228	1,030	6,420	799	295	185	-	-	-	8,957
1986	304	1,279	10,574	1,378	351	323	-	-	-	14,209
1987	447	2,552	12,296	1,634	664	417	10	123	-	18,143
1988	659	2,758	10,102	1,703	950	494	11	131	-	16,808
1989	1,177	3,366	13,769	1,947	951	471	21	132	-	21,834
1990	1,209	4,871	12,812	2,277	1,799	768	30	163	140	24,069
1991	1,309	6,211	14,306	2,631	2,383	1,116	446	163	147	28,712
1992	1,354	7,417	15,333	2,706	3,020	1,350	525	-	150	31,855
1993	2,040	7,690	17,104	2,739	4,791	2,300	715	159	461	37,999
1994	2,355	10,388	19,155	2,244	6,404	2,466	1,140	-	667	44,8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1985-1994)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건물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존의 공공건물과 종합병원 3,043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소정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된 곳은 1.9%인 58개소에 불과하고, 편의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편의시설 설치규칙에 맞지 아니한 곳이 98.1%인 2,985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995. 6월 서울, 대전, 경기도 지역의 기존 공공건물).

<표 3>

시·도	편의시설설치 대상건축물	적정설치	부적정		
			소계	미설치	기준미달
계	3,043	58(1.9%)	2,985(98.1%)	1,776(58.4%)	1,209(39.7%)
서울	1,539	15	1,524	1,007	517
대전	201	13	188	74	114
경기	1,303	30	1,273	695	578

2. 장애인 교통시설 현황

1986년 건설부가 1988년부터 기존 또는 신축되는 공공건물에 총 주차대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의무화한 이후 2,888(27%, 1995년 현재)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1993년 서울지하철 전 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보면 113곳의 역사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혼자서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역은 학여울역 밖에 없고, 대부분의 지하철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녹색교통운동, 1993).

<표 4> 서울시 지하철 계단과 관련된 장애인 편의시설

(1994년 현재)

종류	역수	수량	기타	
엘리베이터	1	1		
에스컬레이터	24	141		
휠체어리프트	3	10		
경사로	1	1		
체어메이트	체어메이트	10	2	
	인터폰	17	77	체어메이트 비치역 출입구, 승강장, 역무실 연결
	안내판	17	77	인터폰 주변에 부착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장실까지 접근하는데 계단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이용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는 등 장애인이 실제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5> 서울시 지하철역 내의 장애인 전용 화장실

(1994년 현재)

종류	역수	수량	
		대변기	소변기
화장실	대변기	19	38
	소변기	17	38
	세면기	6	10
	경사로	1	1

<표 6> 서울시 지하철역 내의 승강장 장애인 안전시설

(1994년 현재)

종류	역수	해당역	비고
승강장안전선	113		전 승강장
방송시설	113		역무실 및 방송시설 완비
유도블록	1	합정역	출입구 ⇒ 승강장

그리고 통일호 이상급의 객차가 정차하는 전국 철도역사 중 219개소 모두가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개찰구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체장애인이 철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감사원, 1995. 9, 서울·대전·경기지역).

이렇게 대중교통 중에 하나인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버스인 경우에는 휠체어 리프트 장착버스나 저상버스가 전무한 실정이고, 청각장애인이 정거장을 알 수 있는 문자안내장치도 전무하다. 그래서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택시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VI.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

1. 관련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법제로서 권고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3조에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부터이다. 그 이후 1985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에는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는 경사로 등 지체장애자에게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동법 제53조 제2항에서 4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한 공공건축물에는 그 가운데 1대 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로 설치하고, 10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판매시설, 관광호텔 또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승강기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법 제33조에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설치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편의시설설치규칙은 기존의 법규내용과 큰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법규의 유무보다는 행정당국 및 사회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법률이 부분적으로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편의시설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래서 제정된 법률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

진법)’이다. 지난 해 장애계를 대표해서 국회에 입성한 이성재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장애계의 열망이 받아들여져서 1997년 4월 10일 임시국회에서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기존의 장애관련법이 장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편의증진법은 장애문제를 둘러싼 모든 사회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어 국민 모두와 관련된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편의증진법의 제정과정

1996년 11월 30일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등 68명의 의원 명의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접근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보장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어 12월 2일 신한국당 의원 7명의 이름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 두 개의 안은 같은 해 정기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11차, 1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토론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4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1996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기를 놓쳐 다음해 임시국회 기간인 1997년 3월 17일에 편의증진법이 통과되었다.

3. 편의증진법의 주요 내용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편의증진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장애인 등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접근권을 인정하고(제4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제8조)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제11조, 12조) △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토록 한다(제13조) 그리고 △구조적으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 기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5조) △국가 등은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도록 하고(제16조),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하며(제18조) △이 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제25조~27조)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강제이행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제28조) 등의 본문 29조와 3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의증진법 제정으로 이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접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법적 권리로 보장되는 긍정적인 변화는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가 단순히 생계보장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오던 기존의 시각변화를 가시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를 만들어 준다는 데도 의미가 있겠다. 더욱이 이 법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동약자를 위해 공공시설이 무장애공간으로 전환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4. 편의증진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 및 과제

첫째, 이 법은 시설과 설비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드웨어만 갖춘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기술적, 경제적인 한계로 인해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원인력의 확보와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편의증진법과 관련된 부처는 대략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철도청 등이다. 그런데 텔레비전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서비스다. 방송과 관련된 부처는 공보처다. 그래서 텔레비전 자막방송을 이 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편의증진법 제4조에 보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보에의 접근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실법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접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

요하리라고 본다.

셋째, 편의증진법은 형식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 형식에 있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 교통수단 이용, 생활 관련 각종 정보접근 등 종합적인 이동상의 편의증진보장을 다루는 법률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불안감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이러한 의식은 불식되리라고 본다.

넷째, 이 법에 의해서 민간시설인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시설인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 주체가 문제로 노정(露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곤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법에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적극 수용하느냐, 과거의 장애인법에서 보여 주었던 관행을 이 법에서도 여전히 적용하느냐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하위법이 본 법에 명시된 접근권 확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보다 폭넓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함께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중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1998~2002)

복지부는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지난 1997년 9월에 세웠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 정비 △출입구 장애턱 제거 및 안내표시 완비 △공공기관 적정배치 및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고, 건축물 및 설비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국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조세감면을 하고, 편의시설 촉진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담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 및 복지교통 구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장애인 자가운전자 지원강화 △특별수송 서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다각적인 장애인 편의증진 방안 강구를 위해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강화 △‘편의시설 연구지원 센터’ 설치 △편의증진 요

원 배치 △이동 및 시설 이용상 편의제공 △주택 개조비용 보조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 다시 말하면 재정확보의 불투명으로 인해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인 서비스가 실시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6. 정보접근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유엔은 1981년 1월 13일 '세계 장애자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의 사회생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평등이란 사회 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생활조건 및 사회경제 개발로 결과된 생활조건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발전의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시급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장애인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담고 있다. 유엔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간 이러한 행동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기저를 들여다보면 보편성(Universalism)과 선택성>Selectivity)의 적절한 조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제3부에서 "세계대회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며 따라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이들과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의 접근이 가능하려면 제한적인 참여가 아닌 사회전반에 걸친 사회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

영역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장애인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완전참여가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욕구에 따른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교육환경이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짜여진 상황에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통합교육은 음성인식·출력 컴퓨터, 스크린 확대기 등의 학습보조기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세계장애자의 해 행동계획'의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장애문제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정보화 정책의 하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소득과 장애와 지역에 상관없이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에 쉽고 적절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보편적 디자인은 전제되어야 한다. 보편적 디자인은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를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누구나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시화해야 하고, 이러한 가시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소득, 장애에 의한 접근장벽을 제거해야 하고, 물리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형편의 차이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1982년 장애인통신법(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을 제정했고, 이 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이나 긴급통화가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전화기들은 보청기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8년 보청기호환법(The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에서 보다 확장되면서 그 내용은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화기가 보청기와 호환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통신에의 접근권 확보는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될 수 없는 보편성이 적용되고 동시에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없다는 사실이 전제가 된다면 정보화 사회는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보편적 권리가 실현 가능한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VII. 미국 장애인 관련 법에 있어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국에서의 건물에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시초는 1959년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건축장벽으로부터 다수의 장애아동의 교육기회를 확보해 주기 위한 노력 이었고, 1968년 건축장벽철폐법과 1990년 미국장애인법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건축장벽철폐법을 보면 △기념건조물, 공원, 유원지, 공공교통기관 그리고 주택 등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에 대해 이를 대체할 방법을 연구토록 하고 △연방, 주, 지방행정부, 기타 공공 또는 비영리기관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 접근표시 사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장애인법에서는 △이용할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한정하거나 자격요건을 두어서는 안되고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법이 제정되고 30개월 이후 건설되는 시설은 건축상 불가능하지 않는 한 장애인이 이용가능하게 한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는 건축부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확대문자나 녹음테이프 등으로 준비하는 것 등도 포함되는 것이고 △장벽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벽제거를 대신할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법원은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로 처음일 때에는 5만불, 그 이후에는 10만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내용이다.

1973년 재활법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인 교통문제는 일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만을 위한 교통수단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적설량이 많은 지역인 경우는 이원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서부를 비롯한 상당수의 주에서는 주류화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된 재활법 504조는 장애인을 위해서 노선버스의 50%에 리프트를 장착토록 했으나 이용상에 문제(리프트 장착버스가 오르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함)로 인해 1986년 도시대중 교통청은 노선버스에 리프트 장착여부를 지역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기로 했고, 1990년 미국장애인법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인정했다.

VIII.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

기존의 장애관련법은 장애인의 고용, 교육 그리고 각종 소득보장에 관련되어 있었다면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가장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접근권 확보운동이 주는 의미는 장애문제 해결이 생계보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장애문제는 기본권 확보가 가능할 때라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사회경제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함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규제조치는 효과면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흔히 장애인 문제의 해결의 지표를 사회통합으로 삼는다. 그런데 사회통합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장애인을 사회에 무조건 밀어넣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다. 법적으로 의무교육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통합교육보다는 여전히 분리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강제하는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분리고용 제도도입이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장애인이 통합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이 통합교육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학교가 제도적으로 굳이 입학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일반 교육현장이 장애인의 학교생활을 물리적인 장벽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사회환경이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장애인을 사회에 밀어 넣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의 가치만을 떨어뜨릴 뿐이다.

장애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인권확보는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함으로써 평등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뜻한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치있는 방법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을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접근권 확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권리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은 이제 장애인 문제해결의 전제가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사회권적 기본권임을 다시 강조한다.

참고문헌

- 강경선, "장애인문제에 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복지법제, 법무자료 제122집, 1989.
-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기념심포지움. 서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
- 박순우, "시민권 보장을 위한 사회입법적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미간행석사논문.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5.
- 국제연합총회, 『UN 제30회 회의결의 제 3447호』, 1975.
- 김정열, "한국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995.
- . "장애인문제의 본질과 대안으로서의 장애인운동". 『장애인복지정책입문』, 서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 .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논문. 서울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6.
-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Kent Hull, *Rights of Disabilitie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인분과 역, 『장애인의 권리』, 서울 : 도서출판 함께걸음, 1992.
- Joseph P. Sapiro, *No Pity : People with Disabilities Forging a New Civil Rights Movement*, Times Books, 1993.
- T. H. Marshall, *Sociology at the Cross Roads and Other Essay*, Heinmann, 1963.
- T. H. Marshall, *Social Policy*, Hutchinson & Co(Publishers) LTD, 1972a.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건축

강병근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 I. 장애인과 접근권
 - II. 장애인 접근권의 현황과 과제
 - III. 장애인 접근권의 국제적 흐름 - 독일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란 없었다
 - IV.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역할 - 무장애 생활공간의 구현
 - V. 글을 마치며
- 덧붙임 / 소요실별 설계기준 및 지침

지난 수 년간에 걸쳐 장애인복지법과 편의증진법의 제정 등 노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재활과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과 결실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의 조성,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지속 가능한 독립성의 확보 등이 실천되어야 한다.

무장애 공간은 일정한 장소나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의 모든 공간과 시설에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실현되어야 한다. 건축적인 장애물의 배제와 제거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생활환경 건설의 아주 일반적인 인간성 회복과 기본적인 인권회복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I. 장애인과 접근권

「 일상적인 생활 속에 장애인이 모든 시설물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접근권이다.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등 도로, 지하철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주거 등 공공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생활필수시설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접근권의 확보이다.

「 장애인 접근권이라는 표현이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요구는 생존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제한없이 이용하게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II. 장애인 접근권의 현황과 과제

1. 관련 법령의 실태와 문제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1984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1989년에 전문 개정이 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중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실제 설치의 무화된 것은 1994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편의시설 설치규칙)'이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제정¹⁾되면서부터이다.

이후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²⁾되어 향후 장애인 접근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기적으로 관련 법규의 원조(元祖)국인 스칸디나비아 3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관련법이 제정된 1967년이나 장애인복지 선진국인 스위스(1969년), 독일(1971, 1972년)³⁾에 비하여 10~14년 정도의 차이밖에 느낄 수 없으나 내용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폭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

우선 앞선 국가의 관련 법령은 모두 장애인의 생활환경 자체를 대상으로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국내 관련법은 전체적인 주변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부적인 물리적 요소(혹은 제한된 시설에서)만을 충족시키도록 강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시작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승강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국내 관련법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전용 승강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거나 사용빈도의 저하로 인한 낮은 효율성, 그로 인한 높은 유지관리비가 설치의

1)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2)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

3) Byoung-Keun, KANG, 'Vergleich der Räumlichen Sonderschulplanung in Europäischen Ländern',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1985

기피, 방치 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지만 설치하는 모든 승강기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고려(출입문의 폭, 조작판의 위치, 조작기의 표시 형태, 음향 신호 등)만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의 차이인 것이다. 즉 관련법의 골격 자체가 총체적인 문제해결의 접근이 아니라 단편적인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내용상의 상이점은 국내 관련법이 지나치게 제한된(정해진) 방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직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앞서 언급한 국가에서는 그 대안을 건축가가 다양하게 선택하거나 창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내법은 현관의 고저차를 없애기 위해 모든 공공주택에 일률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효용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건설관계자로 하여금 법규에 준하여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위안과 면책권만을 부여하는 형태가 되고 마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 옥외에 방치된 경사로는 결빙이 되는 긴 동절기에는 오히려 보행에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얼마의 폭에 어느 정도의 경사도를 지닌 경사로를 현관부분에 설치하라는 법 조항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대안의 창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만 낳게 한다. 대안은 건축가들에게 맡기고 법조항에서는 정해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보행장애인의 접근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도록 접근로를 설계, 설치하도록 하라는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체제라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장애인을 일반인과 구분하거나 격리시켜 교육시키고 일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거주하도록 사회가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을 우생학적 차원에서 격리 수용해 다시는 가족과 그들이 자라온 토양 속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Nationalsozialismus(나치)의 정책보다는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자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과 격리가 결국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반인과 통합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박탈하는 모순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각도의 장애인 통합운동이 교육, 직장, 주거분야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거의 모두 특별히(?) 취급되어 구분 혹은 격리되어 설치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보다는 활동을 제한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폐해를 낳기도 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경우 일

반적으로 남녀화장실 중간에 별도로 설치하여 매우 접근성이 좋은 듯 싶으나 남녀 구분이 없고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로 되어 있어 사용할 때 별도로 관리인을 호출해야 하는 등 사용상의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이를 개선하여 모든 공중화장실에는 1개소 이상의 보행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일반 화장실보다는 다소 폭이 넓은(120~150cm)⁴⁾ 화장실(Booth)을 설치하기만 하면 특별히가 아니라도 보편적으로 실현 및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몇몇 지하철 역사에만 설치된 장애인 전용 승강기 대신 대량으로 승객을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서틀형 승강기의 효율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국 런던 지하철과 경전철을 통하여 검증된 바 있다. 독일의 모든 시내버스 출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옛 역사에 해당되며 스웨덴과 독일의 모든 도시에서는 아예 시내버스의 바닥을 보행로 높이로 낮춘 저상(低床)버스를 개발하여 전철과 같이 누구나 장애없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장애인을 사회공동체 속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관련법 제정의 근본취지를 잘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뒷받침하는 대안이다.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편의시설은 설치자에게 지워지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에만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설치된 후 방치되어 건축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설치 자체에 거부감만 부추기는 역작용이 증폭된다. 이렇게 되면 그 실현은 한계에 부딪히고 장애인 문제는 사회의 대립적인 요소로 부각되어 현 사회 일각에서와 같은 극단적인 생활영역의 격리까지도 요구받는 피해를 입게 된다.

1989년에 제정 공포된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장애영역(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및 정신지체)에 속하는 국내 장애인은 199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39%에 해당되는 105만3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⁵⁾. 그러나 선진국(미국 15%, 호주 15.6%, 영국 14.2%, 독일 8.7%)에 비해 장애인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장애인의 범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협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기 때문이다. 편의시설의 설치현황 또한 1996년 9월 말 현재기준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설치대상 637,776 시설 중 36.8%에 해당되는 234,842 곳이 편의시설을 갖춘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는 턱 낮추기(69.8%), 유도블록(23.6%), 경사로(40.1%), 승강기(22.8%), 화장실(28%), 주차장(32%), 안내표시(26%) 및 기타시설(39.1%)⁶⁾에 한정된 것이고 가장 중요

4) 강병근 역, '장애인을 위한 건축계획', 기문당, 1987

5)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1997. 9

6) 출입구, 복도, 계단, 전화기, 매표소, 개찰구, 휠체어 리프트 등

요한 주택, 교통수단,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아예 규정에도 없고 통계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편의시설의 연계성이 없어 각종 실태조사 결과⁷⁾로 볼 때 실제 활용가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된 전체 장애인의 68%가 집 밖에서 활동할 때 불편을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교통수단, 동반자 부재, 편의시설 미비 등을 대표적으로 거론하였다. 실제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곳까지의 접근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그 곳까지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용 불가능한 시설이 태반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간은 자연의 위해(危害)로부터 스스로를 보호받기 위하여 건축물(shelter)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류 최초의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며 미래에도 인류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역사 속의 많은 건축물들은 인간의 보호처(shelter, Primitive Hut)로서의 역할보다는 때로는 절대자의 시녀(侍女)로 전락하여 보호받아야 할 인간 위에 군림하거나 자연의 균형을 잃게 하여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건축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이용자의 실용적 가치보다는 제공자의 상품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주객(主客)의 전도현상이 당연시되고 있다. 결국 건축의 본질에는 다가가 보지도 못한 채 항상 그 껍질만 분 발라 치장하기에만 모두가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벽돌이 쌓여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을 기초로 부정, 부패, 부실, 부도 등이 모두 모여야 건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탄생한 건축물치고 계획이나 설계상의 선천적인 장애를 안 갖고 출생하는 것이 거의 없다.

건축물이 온통 장애물 경기장이다. 국내 건축물 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건강과 지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 무사히 하루하루를 넘기려면 상당한 행운까지도 뒤따라야 비로소 제 명대로 산다. 인간이 환경을 만든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은 다시 그 환경에 적응한 인간을 만들어 낸다. 즉 인간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환경이 잘못된 인간을 만들어 낸다.

'장애는 질환 혹은 상해 등으로 건강상의 결손이 생겨

7) 보건복지부,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1997

일상생활 중 행동 및 사회 활동에 제한(구속)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계획과 설계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환경 속에서 활동의 불편을 겪는 모두를 대상으로 무장애 공간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III. 장애인 접근권의 국제적 흐름

■ 독일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란 없었다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는 모르지만 지난 1년 동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하여 밤새워 글을 쓰고 열심히 뛰어다녔다. 법과 규칙은 '생활공간 자체를 무장애 공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때로는 호소와 강요(?)를 반복해 가며 마지막 원고를 타고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피난가듯이 독일행 비행기를 탔다.

4월 11일 이후 실무자에게 제시해야 할 설계지침서의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건설공사가 펼쳐지고 있는 통일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달려갔다. 독일의 겨울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다. 우선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다. 해가 구름에 가리워서가 아니라 위도가 높아 해가 지평선에 떠오르다 말고 다시 땅 아래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10시가 넘어야 동이 트고 2-3시면 어두워지니 하루종일 우울하기 그지없다. 땅은 겨울비에 젖어 항상 습하니 거리를 거니는 사람도 거의 없다.

환경이 이러하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히 볼거리 들을거리를 찾아 전시장, 음악당으로 새벽부터 줄지어 달려간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건물에서 건물로 이동하고 그 속에 머무르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당연히 잘 갖추어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시내에 있는 박물관을 포함한 몇몇 공공시설을 둘러보기 위하여 자동차를 몰고 시내를 향했다. 우선 차도와 보도의 턱이 15cm 내외로 낮아 횡단보도의 단차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 차도와 보도 사이는 시각장애인의 유도로 역할을 겸하고 있는 보도와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차를 버스종점에 주차해 두고 시내버스를 찾았다.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적다보니 자연히 저상버스 운행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차해 있

는 버스의 바닥과 보도의 단차가 5cm 내외이므로 휠체어 사용자나 보행기 이용자가 별도의 도움이나 장치 없이도 승하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베를린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베를린은 모든 시내버스를 시에서 직영하고 있음)의 약 85%가 플랫폼 리프트와 경사로를 갖추고 있다. 즉 운전석 쪽의 앞문에는 플랫폼 리프트가 있어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버스의 중앙에 위치한 승하차용 출입문은 수납식 경사로가 부착되어 있고 역시 운전석에서 작동 가능하다. 휠체어 사용자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승차하는 승객은 중앙 출입문을 이용해 문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빈 공간에 휠체어나 큰 짐을 고정시키면 된다. 검표는 하지 않지만 필요시 출입구에 있는 검표기에 각자가 스스로 지하철에서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이러한 장치를 갖춘 버스를 1대 제작하는데 요즈음 환율로 4억 정도가 소요된다.

버스에서 내려 시내를 거닐어 본다. 우선 걷는데 어떠한 장애도 느끼지를 못한다. 단차가 없을 뿐 아니라 있다고 해도 입구 옆에 부착된 버튼만 누르면 항상 지원자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페라 극장 앞 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오페라보다 더 관심 있게 관찰하였다. 우선 이용료가 400원인데 고급호텔 화장실 수준보다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샤워실까지 갖추어진 이 화장실은 문이 닫힌 지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따라서 불일은 20분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그런데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20분이 연장된 40분이 주어진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편의성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예 기숙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현장자료와 연구서적 등을 모으며 약 2개월 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얻은 결론은 '독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시설 어느 곳이나 모두 어떠한 사람도 결코 장애물을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들의 건축기본법은 건축적인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극복할 편의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를 근원적으로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1998년 1월 29일자 기사에는 독일 통계청이 1993년에 발표한 2030년의 독일 내 60세 이상의 노인 수를 2,400만명으로 추정하였다가 5년 후인 오늘날 불가피하게 2,630만명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5년 전 2010년에는 80세 이상의 노인이 3,36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았으나 이 또한 이미 1998년 초 현재 50만 명이 증가한 410만명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제 시설의 이용장애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의 문제이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내 자신의 문제이다. 시설물 자체를 장애물의 정글로 계획하고 건축하면서 커다란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이러저러한 편의시설을 갖추었다고 선전하는 것은

너무나 우수광스러운 광대놀이와 같다. 편의시설이 필요없는 무장애 공간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더 이상 편의시설을 촉구하고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베를린의 시민이 부럽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조물주를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장애를 느끼지 않고 시내를 활보하는 그 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IV.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역할

— 무장애 생활공간의 구현

「'무장애 공간'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다른 이의 도움없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제한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없이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장애인들이 가장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가 사회생활 환경이다. 특히 활동력이 강한 장애인일수록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건축물에서의 편의시설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에서의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은 단순한 '시설의 개선' 차원이 아니라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보장이라는 국민의 당연한 기본 권리를 인정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무장애 생활공간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 비용의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시행의 난이도에 따른 공간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편의시설의 시간 단계별 확충계획

1) 1단계 : 편의증진요원의 확보(무비용 편의증진 방안)

- 편의증진요원을 대별하여 국가기관요원(국가공익요원)과 민간지원요원(민간 자원봉사자)로 분류하여 운용한다.

■ 국가기관요원의 안정적 공급

-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요원인 공익요원이 제도적으로 일정 인력규모 이상 편의증진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추진한다(병무청과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 이 경우 장애인 관련시설별 편의증진요원 파견기준이 필요하며 국가공익요원 중 지원자를 우선하여 편의증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 자원봉사요원의 체계적 활용

- 자원봉사자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등록과 지원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인적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 교육기관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

-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인성교육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대학, 단위직장에서의 자원봉사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이를 편의증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한다.⁸⁾

2) 2단계 : 기존시설의 보완개선(저비용 편의 증진 방안)

■ 공간배치의 조정을 통한 보완개선

-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대로변 1층부에 배치하고 접근, 이용에 장애물이 가장 적은 위치에 배치한다.
- 이 경우에는 편의증진이 단순한 공간배치의 조정만으로도 노인, 장애인 등의 많은 편의를 저비용으로 단시간에 대폭 증진시킬 수 있다.

■ 대안중심의 시설조정을 통한 보완개선

- 기존시설에 저비용으로 개선, 보완 가능한 편의시

8) 시설과 설비만으로 모든 종류의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자원인력의 확보와 공급이다. 이는 가장 오래된 편의증진 수단이기도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며, 인간적인 배려이기도 하다. 따라서 편의증진요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체계의 구축은 무비용으로 편의시설을 대체하는 효과 외에도 시간적으로 기존시설의 보완과 신축시설의 구축에 많은 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편의시설의 '대체수단'으로 이용하고 시설구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보완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설 목록을 대안중심으로 개발하여 시간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므로 소정의 편의증진 효과를 얻도록 한다.

- 이 경우는 미세한 조정만으로 개선가능한 편의증진 기법을 지칭하며 신축에 가까운 증설 등의 건축적인 재구성은 3단계의 고비용 편의증진 방안으로서 신축시설의 설치확대로 해석한다.

■ 시설 조정을 통한 보완개선의 순차적 추진

- 기존시설의 보완, 개선은 1차적으로 공간배치를 조정하고, 2차적으로 조정배치한 공간을 포함하여 저비용으로 개선, 보완 가능한 것부터 우선하여 편의증진 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3) 3단계 : 신축시설의 설치확대(고비용 편의증진 방안)

■ 주거시설의 편의증진 확대

노인 등 장애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신축하는 주거를 최우선적으로 무장애 공간으로 건축하여 편의를 증진시키므로 기본생활권 자체를 확보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증진 확대

-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1차 생활활동권인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시 노인 등 장애인이 접근·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스스로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환경을 만든다.

■ 지역단위(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공공시설의 편의증진 확대

- 주거를 기준으로 한 2차 생활활동권인 지역 내에 위치한 공공시설 신축시 편의시설을 확보함으로 노인 등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된 일상적인 대관(對官) 업무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중앙(지역중심 및 국가단위) 공공시설의 편의증진 확대

- 3차 광역적 생활활동권인 지역중심 및 국가 중심시설에 편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편의증진이 모든 생활권으로 확대 정착되도록 완성한다.

2. 편의시설의 공간 단계별 확충계획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편리하고 동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 모두에게 동등한 사회의 구축이라는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생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무장애 생활공간'은 건물에서 건물로의 이동과 건물 내·외부의 접근, 그리고 건물 내에서의 편의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활동의 연계성이 보장된다.

1) 1단계 : 이동시설의 확보(교통수단이용 공간)

■ 이동(교통)대책 추진의 당위성

-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교통 서비스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책 추진한다.
- 장애인이 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겪는 자신의 개인생활 공간 속의 장애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잘 정비되고 익숙해져 있는 생활공간 내에서는 장애물을 더 이상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이 공간을 떠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부터 좌절과 커다란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대책은 경제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상적인 생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장애물 중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초작업이다.

■ 공공 교통대책의 수립

(지역간 이동수단)

- 지하철 역사의 접근권 확대(단거리 이동대책 - 최우선 추진대책)
향후 도시인의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이 될 지하철을 모든 종류의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에 수직 이동수단과 각종 표시, 안내물만 장애인 겸용시설로 보완하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확보된다.
- 철도 역사 및 객차의 이용권 확보(장거리 이동대책 - 우선 추진대책)
현재 운행 중인 철도시설을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역사와 객차를 개선하여 노선별, 운행 열차별로 1량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차로 편성 운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열차는 특히 장거리 이동객을 가장 안전하고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유리하다.

· 항공기 이용기회의 확대(장거리 이동대책)

공항청사 등에는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항공기 내 이동용 휠체어의 비치와 기내 화장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이용기회를 확대한다.

(지역내 이동수단)

· 시내버스 안내표시의 개선(최단거리 이동수단)

휠체어 사용자를 제외한 기타 장애인의 버스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안내표시를 시각·청각 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 및 문자안내 시스템으로 전환 개선한다.

· 특수버스의 운행(최단거리 이동수단)

휠체어 사용자와 노약자 등 타인의 지원으로 이동 가능한 이들을 위해 리프트 등 특수한 장비를 갖춘 버스를 주거에서 지하철 역사까지, 혹은 지역 내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를 공공 교통시설로 개발 공급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하도록 한다.

■ 개인교통수단의 지원

· 장애인 개개인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개인 장·단거리용 교통수단을 지원, 제공하는 것은 많은 공공 교통 부분의 미진함을 보완할 수 있다.

■ 주차공간의 확보

· 모든 공공 주차장에는 일정 부분을 반드시 장애인 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개인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한다.

■ 교통정보의 제공

· 공공 교통수단의 이용편의뿐만 아니라 자력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수송 서비스 제공, 이동 및 여행편의와 관련해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방안을 강구한다.

2) 2단계 : 접근시설의 보완개선(보행이동공간)

(보행이동로의 보완개선)

■ 공공 보행이동로의 정비

· 공공 도로변의 보도, 지하보도, 육교, 횡단보도 등을 휠체어, 유모차, 보행기, 자전거 등의 보행장애인과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정비하되 주거주변 지역이 모두 연결되도록 한다.

■ 건물 접근로의 정비

· 공공 보행이동로에서 건물의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를 단차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근린 생활공간을 무장애 공간화한다.

■ 건물 출입구 부분의 정비

· 단차없이 접근가능한 출입구 공간을 통과 가능한 폭으로 계획한다.

(정보접근로의 보완개선)

■ 용이한 정보접근로의 개설

· 전 국민 정보공유의 의무화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정보서비스 전산망을 구축한다.
· 정보화 시대의 장애인 정보통신권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PC 통신을 이용한 정보획득과 교류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방송 시스템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시각·청각장애인이 방송을 통해 충분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환경을 정비한다.

■ 장애인 생활편의 정보제공

· 장애인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안내지도 워킹맵(Walking Map)의 제작, 통신을 이용한 정보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 비상정보체계의 구축

· 장애인을 각종 재해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내 비상정보 네트워크

크를 구축한다.

3) 3단계 :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시설 내 생활공간)

■ 건축공간 내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

· 시설 내 각 기능실별로 소요되는 각종 편의시설·설비의 설치를 확대한다.

■ 장애인 검용시설의 설치 확대

· 시설 내 각종 편의시설·설비는 장애인 전용을 가급적 배제하고 일반 시설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검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확대한다.

■ 편의시설 연구센터의 설립

· 편의시설 연구센터를 국책 상설기구로 설립하여 한국적 여건에 적합한 편의 시설에 관한 각종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이미 설치된 편의시설·설비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심의하며, 시설의 표준설계도 작성, 시공 후 사후 관리 및 기술적인 지도와 자문을 구한다.

V. 글을 마치며

흔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선 영구적인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연상하기 쉬우나 사실은 의외로 단기적인 혹은 일시적인 장애 요인을 가진 장애인에 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즉 그 장애요인이 반드시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는 무관하면서도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영구장애인과 동일한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양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출입문 앞에서 있는 사람, 유모차를 밀고 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주부, 알 수 없는 영어나 한자 등으로만 표기된 안내 및 조작판 앞에선 어린이와 노인, 정전이나 화재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방문자, 이러한 예는 실로 수

없이 많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들이다.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설치된 승강기의 조작판은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키 작은 어린이까지도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리며 더구나 흐린 영어로 표기된 디지털 조작판은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순간적인 무능자로 만들어 버린다.

건강한 주부라 할지라도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한, 계단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보행장애인이 되고 만다. 임신부가 해산을 하기 전까지는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계획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역시 일시적인 장애인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소위 '건강한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이 공간의 계획방향을 설정할 때, '가장 건강한 그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건물 계획자만큼이나 지능적인 사람'만이 그 시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모든 기준을 결정해 버리는 우(遇)를 범하게 된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행위에 전혀 장애를 느끼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익할 뿐이지 결코 어떠한 희생도 요구되지 않는다.

계단이 없는 출입문을 만들고 다소 폭이 넓은 문을 제작하며 손으로 잡기 쉬운 레버(Lever)식 손잡이를 장착한다고 해서 반드시 건축비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을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대로면 1층 부분에 배치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일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의 도로 경계석 높이를 낮게 계획하는 것이 결코 두 발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용상 어떤 불편을 참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물의 계획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용자 모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모든 시설의 이용자가 건축계획 대상의 중심이 되는 가장 훌륭한 건물이 탄생될 것이다. 이렇게 이용상의 기능이 훌륭한 건물이 그 어떤 시각적인 미(美)를 갖춘 건물보다 아름답고 사랑받을 수 있다. 이는 곧 가장 인간적이며 인간을 위한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Byoung-Keun, KANG. "Vergleich der räumlichen Sonderschulplanung in europäischen Ländern",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1985.
- 강병근 역, 『장애자를 위한 건축계획』, 기문당, 1987.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1997.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수도권 지역 실버주택 타당성 분석," 1996.2.
-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1994.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종합분석(4-1)』, 1993.
- 국제산업정보연구소, "노인주거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 1993.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특수수요계층 주거선호에 대응하는 주택건설 및 공급방안 연구(II)", 1995.3.
- J. David Hoglund, 湯川和和 역, 『世界の高齢子住宅』, 鹿島出版社, 1989.

덧붙임

소요실별 설계기준 및 지침

1. 출입공간

모두를 위한 '무장애 공간' 계획이란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건물 출입구는 반드시 단차가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조그마한 단차는 경사로를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이때 최대경사도 6%, 최소 유효폭 120cm, 최대 길이 600cm). 빗물의 효과적인 배수를 위하여 트렌치를 설치하는 것도 좋으나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엘코브(Alcove)식 출입구가 더욱 바람직하다. 80cm폭의 출입문은 모두를 위한 문으로서 지나치게 협소하다. 왜냐하면 휠체어 사용자가 방문을 하였을 때는 최소한 90cm 유효폭의 출입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폭은 전동휠체어도 통과할 수 있는 출입구의 유효폭도 된다.

일반적인 고려사항

- ① 건물의 출입구는 번지수나 문패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응급시 의사나 구호요원이 쉽게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 ② 건물 출입문의 전·후면 손잡이쪽 벽에 손에 든 물건이나 우유, 신문, 우편물 등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작은 선반을 설치한다.
- ③ 건물의 출입문은 최소한 유효 통과폭 90cm는 확보하여야 한다. 출입문 전후의 활동공간 확보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④ 최소한 거실에 한정하여서라도 90cm 폭의 출입문 폭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방문객이 거실에 출입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과의 교류에 건축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배려이다.

1) 현관

현관은 건물 내에서 방어력이 없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가 고려되어야 하는 곳이다. 즉 방문객의 음성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폰 (Video Phone), 눈부심이 없는 현관조명 등의 확보, 출입자의 진출입시 자동으로 점멸되는 현관 내부등의 설치는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충분한 밝기의 조명 확보에 유의한다.
- ② 건물 현관 출입문 개폐를 위한 활동공간에 면하여 앉아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의 외투걸이용 옷걸이(wardrobe)를 설치한다. 이때 돌출된 옷걸이가 현관의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신발털이용 매트는 휠체어, 목발 이용자, 노인 등 보행장애인에게 위협요소가 된다. 이때 안전을 위해 먼지털이용 매트를 현관바닥에 매립하여 고정시켜 둘 수 있으며, 특히 매트가 브러쉬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휠체어의 바퀴를 터는데 도움이 된다.
- ④ 특히 바닥재료의 교차가 빈번한 현관에서 이로 인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⑤ 문턱이 없음으로 인한 현관의 방풍, 방음, 방진(防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첫째, 영구 자석(磁石)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열리는 문의 하부에 얇은 자석띠를 고정시키고 다른 자석띠는 상하로 움직이도록 문이 닫히는 위치의 하부 바닥 U형으로 된 경금속 홈에 끼워 둔다. 문이 닫히면 자석 문풍지는 서로 압착되어 밀폐되고 문을 열면 하부 자석띠가 미끄러져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둘째, 상기 방법보다 더 기밀성을 요할 때 유용한 것으로 바닥에는 별도의 장치나 시설 설치없이 문의 하부에만 U형의 유연한 고무문풍지를 달아 문의 손잡이와 연결시켜 문을 닫고, 이 손잡이를 일정 방향으로 90°회전시키면 문풍지 고정대나 문 자체가 일정한 높이 만큼 가라앉게 하여 이 고무문풍지를 바닥에 밀착시키는 시스템이다. 이 방법은 단열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2) 복도

복도는 연결 및 교통로이다. 그 안에서 휠체어를 회전하거나, 다른 방으로 건너, 휠체어를 탄 채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복도는 항상 어디에서나 장애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출입구가 모두 복도에서 직각으로 통과하여 문을 드나들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쪽의 복도이건 상관없이 자주 여기저기 부딪히게 마련이다. 때문에 휠

체어, 전동차 등 보행보조장비 등의 충돌로부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 문틀, 벽체 모서리 등에 보호용 철판을 설치한다. 이 철판은 다양한 색상과 재료, 즉 목재,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제품이 모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설치 가능한 것들이다.

- ① 건물 내 모든 활동공간은 반드시 최소 유효폭 120cm를 유지해야 한다.
- ② 밖으로 열리는 출입문이 있는 복도의 출입문 앞 유효공간은 문이 열리는 범위를 포함하여 폭이 결정되어야 함으로 120cm×150cm는 확보되어야 한다.
- ③ 막다른 복도의 최소화된 폭이라 할지라도 120cm 이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건물에서의 복도 최소폭은 반드시 150cm 이상이어야 한다.
- ⑤ 침대차를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그 최소폭이 180cm~200cm는 확보되어야 한다.
- ⑥ 휠체어가 180°회전할 필요가 있는 공간은 150cm×150cm, 360°방해없이 회전할 수 있는 유효공간은 160cm×160cm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문

- ① 문의 전후면 유효공간은 반드시 최소한 120cm의 폭에 120cm의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의 건물에서는 문을 여는 쪽 활동공간은 150cm의 폭에 120cm의 깊이를 유지해야 하고 그 반대편인 문이 열리는 쪽의 유효공간은 150cm의 폭에 150cm의 깊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② 코너에서 직교되는 벽체로부터 문의 손잡이까지는 최소 30cm, 적정 50cm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 ③ 모든 문의 폭은 안목치수 기준으로 반드시 80cm는 유지해야 한다(휠체어 사용자의 경우는 모든 문의 폭이 안목치수 기준으로 90cm 유지). 대문이나 현관문은 90cm의 통과폭을 유지해야 한다.
- ④ 승강기의 문과 차고의 문은 자동으로 개폐되어야 한다.
- ⑤ 화장실 문은 안쪽으로 열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⑥ 열린 상태의 문이 통행로나 활동공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어체크를 부착하여 문이 저절로 닫히도록 한다. 이러한 문체는 화장실이나 복도에 면해 있는 방의 출입문에서 자주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문들은 대부분 피난 방향인 외부로 열리기 때문이다. 이때 활동공간에 열린 채로 있는 문의 모서리가 시각장애인에게는 인지되지 않아 부딪혀 상처를 입게 되는 위험한 장애물이 된다.

- ⑦ 강화 유리문 등 대형 판유리로 된 문은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강조된 수평창살 등을 설치한다.
- ⑧ 대형 유리문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높이 120cm와 160cm 지점에 눈에 띄는 충돌 방지 표시를 한다.

여닫이문

- ① 도어체크가 당기는 힘의 세기는 10N 혹은 6.5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내민 정첩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문의 통과 유효폭을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 ③ 손잡이는 60cm 길이(추천)로 수평이 되도록 문의 안쪽 높이 80cm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 ④ 여닫이문은 90° 이상 열리도록 한다(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문의 두께 + 정첩이 내민 폭 + 손잡이의 돌출 부위 만큼 유효 통과폭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⑤ 자재문은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행장애인이거나 휠체어 사용자가 문을 통과하는 동안 계속 문을 밀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되고 미처 통과하기도 전에 닫히는 문이 통과자를 밀칠 수 있기 때문이다.
- ⑥ 휠체어의 발판으로부터 충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문의 철타관은 바닥으로부터 15cm~30cm 높이에 설치한다.
- ⑦ 개폐되는 문이 이동공간 내로 움직일 경우 일반인과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 위치에 반대편을 관찰할 수 있는 창을 문에 설치한다.
- ⑧ 화장실의 문은 반드시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미닫이문

- ① 미닫이문은 여닫이보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넓은 개구부와 폭이 더 넓은 출입문 전후 유효공간을 필요로 하고 방음, 단열 등의 문의 여밈에 문제가 발생한다.
- ② 한쪽으로 열리는 한 폭 혹은 양쪽으로 열리는 두 폭 미닫이가 있다. 미닫이문은 항상 여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욕실, 화장실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완전한 차음과 단열이 되는 미닫이문은 매우 많은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며 벽체에 매립되지 않은 미닫이문은 상당히 많은 여유공간을 소요로 한다.

- ③ 문이 열릴 때 손잡이에 손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손잡이에서 손이 빠지지 않으면 손이 문틀에 낄 가능성이 있다.
- ④ 비상출입문으로는 미닫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상시에는 대피자가 문이 미닫이인 사실을 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급할 때 사용되는 비상출입문은 밀면 열리는 박여닫이가 적정하다.
- ⑤ 규모가 큰 미닫이문은 여닫는데 지나치게 무겁고 힘들다. 그리고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4) 창

창은 주거 내에 햇빛을 받아들이고 날씨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외부세계와 시각적 접촉을 가능케 하는 교량역할을 한다. 장애인은 특히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햇빛이 잘 들고 충분한 경관이 확보된 방향에 창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창가 의자에 앉은 채로 주변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은 접근 가능해야 하고 이용 가능해야 한다.

- ① 최소한 하나의 거주실 이상에서 외부를 자유로이 관찰할 수 있는 60cm 창대높이 이상 부분이 개방된 창의 설치가 필요하다.
- ② 1층 부분 건물의 창에는 특히 도난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 ③ 창은 장애없이 접근 가능해야 하고 자유롭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 ④ 박여닫이와 회전창은 부적절하다.
- ⑤ 앉은 위치에서 손쉽게 움켜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 걸쇠 등은 창의 중앙부에서 아래쪽으로 옮겨 달아야 한다.
- ⑥ 안여닫이창에 젓힘(Tilt) 기능이 있는 것이 좋다.
- ⑦ 열린 위치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⑧ 차광, 도난방지방 셔터는 핸들이 반드시 고정형이어야 하고 오직 한 손만으로도 작동 가능해야 한다. 양손을 이용하거나 줄을 당겨 작동하는 방식은 노인에게 사용상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 ⑨ 블라인드, 커튼 등도 앉은 자세에서 작동 가능해야 한다. 이중유리 사이에 매입된 베니션 블라인드의 경우에도 작동 핸들은 창의 아래부분에 장착한다.
- ⑩ 만약 창대 아래 방열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반드시 접촉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⑪ 현관문을 관찰할 수 있는 볼록거울이 필요하면 창대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 ⑫ 외부온도를 실내에서 잘 관찰 수 있도록 창 의 바깥편에 온도계를 부착한다.
- ⑬ 열려 있는 창이 통행로 안에 걸쳐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충돌 의 위험을 주기 때문이다.

2. 거주공간

1) 거실

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거실에서 소비한다. 특히 기동력이 약화될 수 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때문에 거실은 장애인들의 식사, 휴식, 독서, 글쓰기, 흡연, TV시청, 공작, 수공예, 연주 및 방문객의 응접 등으로 활용된다. 규모가 적은 시 설의 경우에는 침실 코너도 거실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거실의 최소규모는 1인 거주시 최소 18㎡, 2인 거주시 20㎡, 시설주거에서는 최소 16㎡를 추천하고,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20㎡(1인 주거)와 22㎡(2인 주거) 이상 확보할 것을 DIN 18025 Teil 1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최소규모의 거실은 외부와의 접 촉이 제한된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주생활공간이므로 가능한한 남향 일사량이 충분히 확보되는 위치여야 한다.

주방과 식당, 햇볕이 잘 들고 바람막이가 되어 있는 발코니나 테라스를 거실에 직 접 면하게 하여 장애인의 가사노동을 최소화하거나 외부와의 시각적 접촉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발코니의 최소규모는 150cm×150cm이며 각종 전기기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적인 고려사항

- ① 거실 내에서 가장 근본적인 고려사항은 문이나 가구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자유 로운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120cm의 폭에 120cm 깊이의 유효공간이 필요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주거에서는 150cm의 폭에 150cm의 깊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유효공간은 다른 공간과 겹쳐 사용되도록 배치될 수도 있다.
- ② 스위치 등 거실 내의 모든 조작기구는 벽 모서리로부터 반드시 50cm 이상의 간 격을 유지하고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방열기에 부착된 Air Pin 등 조절기 높이는 40cm~80cm 내에 둔다).
- ③ 모든 특수한 거실용 의자는 일반 거실용 의자보다 규모가 크고 많은 수납면적

을 필요로 한다.

- ④ 대부분의 이러한 물건은 전기장치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거실벽에는 이를 위한 여러 개의 콘센트를 설치한다(반드시 벽 모서리에서 50cm 떨어진 곳).
- ⑤ 특별한 경우 120cm×150cm 바닥면적 규모의 천정 레일형 리프트(Lift)를 설치한다.
- ⑥ 거실의 천정틀 구조는 이러한 기구를 매어달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⑦ 실내 천정부착용 리프트 시스템(Lift System)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 콘센트를 설치한다.
- ⑧ 책상은 가변형 높이 조절식이고 휠체어 팔걸이와 발판이 탁자 밑으로 자유롭 게 드나들어야 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스듬히 기울어진 다 리를 가진 모양은 피한다. 다가앉는 면은 최소한 폭 90cm에 깊이 120cm가 되어 야 한다.
- ⑨ 높은 장과 선반의 측면은 휠체어로 접근하여 앉은 상태에서 짐게나 오르내리는 시스템을 이용, 높은 곳의 물건을 잡을 때 쓰는 여유공간으로 확보한다.
- ⑩ 책상의 한쪽 면은 폭 90cm, 깊이 120cm의 최소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⑪ 각종 장, 선반, 문갑 등은 최소 90cm 깊이(휠체어의 경우 150cm)의 활동공간을 확 보해야 한다.
- ⑫ 가구의 아래가 막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정면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는 측면으 로 접근이 불가피하므로 이때는 가구와 나란한 방향으로 120cm 깊이의 활동공 간을 확보한다.

2) 침실

장애인 주거에서 침실은 단순히 '침대공간', '옷과 빨래를 수납하는 공간'의 역할 이 아니라 거실과 같은 '거주공간'이다. 만약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 는 경우, 침실이 병실분위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침실은 반드시 개인적 취향 을 반영해야 하고 무엇보다 거주를 위한 아늑함이 확보되어야 한다.

행동의 제한을 받는 장애인의 침실은 흔히 엄격한 방범시설과 높은 기밀성 때문에 자연통풍이 결여되어 곰팡이가 널리 번식하게 된다. 최적의 실내공기 조건을 유지하 기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습도조절에 실패하게 되고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마감재의 선별 등도 소홀하기 쉽다. 조그만 설비적 보완으로도 실내 온도의 적 절한 조절은 물론 공기의 오염도도 개선할 수 있다. 앞으로 생태학적 침실계획이 보 다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급증하는 알레르기, 곰팡이, 마이

러스 오염 등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노화 또는 장애로 인한 행동의 제약은 침실공간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비좁고 낮은 침대는 관절이 경화된 장애인이나 노인 혹은 몸의 움직임에 제한을 느끼는 이에게 매우 큰 이용상의 어려움을 갖게 한다.

주간에 각종 보장구를 이용해야만이 자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침대 위에서는 자립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높이나 방향, 기울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침대 혹은 매트리스가 침대 위에서의 자세를 변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섬세한 배려는 전문분야 종사자의 조언을 토대로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침실은 장비와 가구 등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밀착 간호가 불가피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가 침실에서 필요한 경우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침실을 융통성 있게 분할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건축적인 고려사항

- ① 휠체어 활동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는 침실에서도 모두 유효하다.
- ② 깊이가 120cm의 활동공간을 침대 한 면에 나란하게 확보한다.
- ③ 밀착간호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이 효과적으로 간호할 수 있도록 침대의 3면에 접근 가능한 여유공간을 둔다.
- ④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침대와 나란한 활동공간은 반드시 깊이가 150cm가 되어야 한다.
- ⑤ 침대 앞, 수납장, 문갑 앞 등 기타 활동공간은 최소 90cm 이상을 확보한다.
- ⑥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기타공간의 측면접근하는 활동공간은 깊이가 120cm는 되어야 한다.
- ⑦ 정면접근하는 수납장 앞의 활동공간은 깊이가 150cm는 되어야 한다.
- ⑧ 옷장은 밖으로 옷걸이를 모두 끄집어내거나 회전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이때 옷걸이의 진출입은 전동식으로 할 수 있다).
- ⑨ 침대의 높이는 60cm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발코니

- ① 발코니 바닥면의 유효폭과 깊이는 최소 150cm×150c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② 모든 다른 활동공간의 계획은 사안별로 앞에서 세웠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③ 휠체어에 앉은 채로 경관을 내다볼 수 있도록 난간, 화단 등의 높이를 조정한다.

④ 장애인을 고려해서 바닥 마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특히 자기질 타일은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곳은 날씨에도 발코니에 나가 앉는 것을 고려하여 투명유리나 어닝 등으로 지붕을 씌우고 바람막이 벽, 방열기, 흙 혹은 나무를 소재로 한 취미활동용 작업대, 전등, 화분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의무기준이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재로서의 추천사항이다.

배수시설 또한 완전해야 하고 여러 곳에 방수콘센트를 설치한다. 이는 여름철 모기 유인기, 이동식 TV, 전기그릴 등을 필요시 자유롭게 설치 사용하기 위함이다.

발코니 설치시 매우 어려운 문제는 배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계획이다. 실내와 문턱 없이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문을 반드시 외부에 달고, 문 앞에 트렌치를 만들거나 목재 등으로 배수가 되는 역세스 플로어(Access Floor)를 설치한다.

방음, 방풍 등을 해결한, 완벽하게 문턱이 없는 외부 출입문은 국내시장에 아직 보급된 바가 없다. 앞서 출입문 기준에서 밝힌바와 같이 미닫이는 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문턱을 바닥에 매립할 수는 있어도 여밈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여닫이 역시 바닥면에서는 문턱 없이 완전한 여밈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2cm 이하의 방풍턱과 끼움재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다. 물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알프스 국가들에서 수입한 여닫이 출입문은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보완하여 완벽한 방음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너무 고가라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⑤ 문턱 없는 발코니 문
- ⑥ 앉은 자세에서 가볍게 열 수 있는 발코니 문
- ⑦ 필요시 햇빛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가변식 가리개
- ⑧ 전화기 접속구 혹은 무선전화기
- ⑨ 방수 콘센트
- ⑩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화단
- ⑪ 미끄럼방지용 바닥 마감재, 간격이 큰 깔판 등은 배제한다.

4) 욕실 및 화장실

욕실 겸 화장실은 부엌과 함께 장애인 주거 내에서 가장 섬세하고 까다로운 건축계획적 대안을 필요로 한다. 항상 바닥에 물을 많이 흘려 보내야 하는 필요성이 큰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미끄러짐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행동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보조자 없이 입욕을 원한다는 점 등이 특별한 계획적 배려를 요구하는 한 단면이다.

욕실에서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보조장치 및 기기는 오히려 행동반경의 급격한 제약을 가져오고 자립을 해친다. 따라서 욕실 내에 각종 기기 및 장비를 선정, 설치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욕실계획의 범주에는 많은 사소한 배려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된 각종 손잡이의 위생문제, 접근이 용이하고 손쉬운 샤워를 위해 욕조를 없애고 바닥에 그냥 물을 흘려 보내야 하는 시스템의 편의성 이면에 충분한 기계적 강제 환기의 보강 혹은 오직 장식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선정된 바닥타일 미끄러짐의 위험 등이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점이다.

각종 액세서리 선정시에도 넘어질 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적은 형태와 재료, 부착 방법 등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장애인의 입욕시간이 매우 길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가족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염성 박테리아가 방문객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객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도 고려한다. 3인 이상이 휠체어 사용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변기에 세면기가 갖춰진 별도의 화장실이 반드시 요구된다.

욕실에서 '무장애 활동공간(Barrier Free Zone)'의 깊이는 욕실기구 전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120cm,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는 150cm×150cm(휠체어 회전공간)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욕실의 크기는 최소 약 4.6㎡(샤워조)~5.5㎡(욕조)의 정사각 형태가 소요된다. 화장실이 위치는 현관과 침실에서 최단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욕실의 문은 반드시 밖으로 열리도록 한다(대안 : 미닫이문). 이는 '무장애 활동공간'의 확보에도 용이하지만 위급시 쓰러진 사람이 출입문을 차단하여 구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문의 유효폭은 80cm~85cm를 유지한다.

건축적인 배려

- ① 욕실에는 휠체어를 타고 진입가능한 샤워장이 있어야 한다.
- ② 욕조를 샤워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욕조 내에 바닥높이 조절용 리프트를 설치

해야 한다.

- ③ 세면기는 반드시 평편하고 휠체어를 타고 접근 가능하도록 세면기 밑이 비어 있어야 한다.
- ④ 세면기의 높이는 필요시 이용자에 적합하도록 조정 가능해야 한다.
- ⑤ 변기의 좌대 높이는 반드시 48cm를 확보해야 한다.
- ⑥ 이 높이는 개개인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⑦ 뒷 벽면에서 변기의 전면까지는 70cm가 되어야 한다.
- ⑧ 높이가 조정이 자유로운 벽걸이형 변기를 사용하면 변기에의 접근도 용이하다.
- ⑨ 욕실 및 화장실에는 반드시 강제 환기시설을 한다.
- ⑩ 화장실 및 욕실문은 반드시 밖으로 열리도록 계획한다.
- ⑪ 대형 유리문은 반드시 명암이 분명한 안전유리로 계획한다.
- ⑫ 출입문의 안쪽에 수평으로 약 60cm의 손잡이를 높이 85cm 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⑬ 시각장애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문의 잠금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므로 열린 문이 통행로를 차단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 ⑭ 특별히 욕실 및 화장실의 벽, 바닥, 천정은 각종 장비와 설비를 고정시키기에 충분히 견딜 만한 견고성을 지녀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 ①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위생기구나 액세서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욕실 및 화장실은 바닥난방을 적극 권장한다. 바닥난방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맨몸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따뜻한 발판 역할을 해 주고,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에 용이하며, 건조한 바닥면을 유지하므로 곰팡이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
- ③ 난방, 실내온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반드시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난방이 되어야 하고 실내온도는 26℃부터 필요하면 그 이상까지 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개별 난방기구가 필요하다.
- ④ 병모양의 이동식 소변기를 세척하거나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코너를 화장실 내에 확보해야 한다.

- ⑤ 이 병은 매우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고 사용 후 자동세척기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 ⑥ 샤워호스에 연결된 수도꼭지는 세면기에 매우 중요한 필수품이다. 왜냐하면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감을 때 등에 특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 ⑦ 팔의 동작에 제한을 받거나 몸을 굽힐 수 없는 노약자 등을 위하여 변기는 반드시 자동세척형 비데(Bidet)가 달린 것으로 설치한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전에 시험사용을 한 후 설치한다.
- ⑧ 변기에서 손이 닿는 곳에 샤워호스에 연결된 수도꼭지가 있으면 용변 후 세척용으로 매우 유용하고 위생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 ⑨ 벽걸이형 변기(휠체어의 접근이 바닥에 고정된 변기보다 유리) 등이 설치된 뒷편 벽면으로부터 변기 전면까지의 깊이가 70cm가 유지되도록 추천한다. 이는 몸의 동작에 제한을 받는 이용자에게 변기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세척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때 변기 자체로 부족한 깊이의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설비가 요구된다.
- ⑩ 휴지걸이는 손에 잡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뒷 벽면이나 측벽 뒷부분에 치우쳐 있어서는 안된다.
- ⑪ 변기의 플러쉬 밸브 또한 손에 잡기 쉬운 벽면에 눌러서 터트리는 레버(Lever)식 손잡이로 되어 있는 것이 좋다. 변기 뒷편 저수조에 달려있거나 벽면에 매립된 밸브의 경우는 접근이나 작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용자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욕조

- ① 욕실의 실내온도는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32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난방시설을 갖출 것을 추천한다(예를 들면 초소형 벽걸이용 전기온풍기).
- ② 미끄럼 방지용 바닥마감재,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타일은 피한다.
- ③ 욕조 속에 설치하여 앉거나 누운 상태로 욕조 윗면 높이까지 바닥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한다.
- ④ 욕조의 바닥면과 벽면은 반드시 직각에 가까운 것이 미끄럼을 방지하기에 유리하다.

샤워기

- ① 자동잠금 샤워꼭지 : 누르면 물이 흘러나오나 일정하게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물이 자동으로 잠기는 샤워기를 설치한다.
- ② 접이식 샤워의자 : 벽걸이형으로 최소 좌대규모가 40cm×45cm는 되어야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 ③ 샤워의자는 차갑지 않아야 하고 특정한 높이에 설치 가능해야 하며 손잡이와 함께 설치하여 측면에서 미끄러지며 올라앉을 수 있어야 한다.
- ④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누운 채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접이형 침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때도 높이는 자유로이 선택하여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 ⑤ 천정이나 벽면에 설치하여 욕조나 변기, 샤워의자 등으로 옮겨 앉힐 수 있는 장비는 특별한 경우에만 선택한다.
- ⑥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샤워기 주변에는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커튼 등을 설치하여 앉은 상태로 여단을 수 있도록 한다.

변기

- ① 변기의 좌대는 히팅이 되고 쿠션이 있는 것이 좋다.
- ② 변기의 좌고를 높이기 위해 기존 변기에 좌대만 추가로 올려놓으면 이것이 미끄러지거나 고정되지 않아 이탈될 위험이 있다.
- ③ 불가피하게 옮겨 앉히기 위한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접근이 방해되지 않도록 한편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천정에 설치하는 리프트를 추천한다.
- ⑤ 자동 항문세척장치는 가능하면 시험사용 후에 선택한다.
- ⑥ 공기건조기가 부착된 자동 항문세척기보다 변기에 부착된 비데(Bidet)가 훨씬 위생적이고 여러 모로 기능적이며 편리하다. 이 통합변기는 장애인에게 유용할 뿐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에게 특히 편리하다.

3. 기타 위생기구와 액세서리

1) 세면기

- ① 샤워호스에 달린 이동식 수도꼭지가 고정식보다 유용하다.
- ② 세면기 앞에 손잡이 달린 견고한 접이식 의자가 있으면 노약자에게 유용하다.

- ③ 전동식 높이 조절형 세면대는 필요시에만 선택한다.
- ④ 카운터식 세면대에 윗판이 특별히 평활하고, 세면기 아래로 휠체어가 들어가며, 피트랩(P-Trap), 전면 물흐름 방지턱, 측면 사용가능성 등이 확보되면 좋다.
- ⑤ 접이식 손잡이
- ⑥ 고정 혹은 접이식 공기건조기(Air Towel, Hair Dryer)

2) 수도꼭지

- ① 수도꼭지는 사전에 부착하여 두기보다는 사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것을 논의 후 선정한다.
- ② 손으로 잡고 돌리지 않아도 되는 레버(Lever)식 손잡이만을 사용한다.
- ③ 전자감응식이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 ④ 적절한 온도선택이 용이한 냉온수 통합형 싱글레버가 적합하다.
- ⑤ 손으로 레버 수도꼭지를 작동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한 길이가 긴 레버형 수도꼭지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 ⑥ 지지대는 반드시 접이식으로 하고, 지지대와 세면기 내부 앞쪽 모서리까지는 최소 18cm~22cm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⑦ 물의 온도조정도 반드시 레버식 손잡이로 하도록 한다.
샤워실 내의 모든 수도꼭지는 냉수에서 온수로의 조정범위가 200° 이상 수도꼭지를 회전하여야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이는 냉온 혼합수의 온도변화가 미세한 회전만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⑧ 세면기의 수도꼭지는 가급적이면 추가적인 샤워용 수도꼭지와 같이 설치한다.
- ⑨ 벽면에 부착되어 샤워, 욕조, 세면기 등으로 이동시키며 사용할 수 있는 호스 달린 수도꼭지는 누르면 물이 나오고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물이 잠기도록 한다.
- ⑩ 샤워용 수도꼭지는 반드시 샤워용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 ⑪ 만약 동일한 샤워용 수도꼭지를 변기 가까이 설치할 경우 변기에 앉은 자세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⑫ 벽면 고정형 수도(샤워)꼭지는 피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애인에게는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치되기 때문이다.

3) 액세서리

- ① 휴지걸이 : 벽면에 접이식으로 부착한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것은 피한다.
- ② 수건걸이 : 필요(위급)시에는 제2의 보조용 손잡이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한다.
- ③ 거울 : 상·하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아래쪽 거울은 아래로 약간 숙여지도록 부착한다.
- ④ 기울기 없는 거울 : 앉거나 선 자세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60cm×70cm~90cm).
- ⑤ 비누 : 한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것이나 손을 대면 나오는 물비누가 좋다.
- ⑥ 비누통 : 욕조나 샤워기 옆 지지용 손잡이에 걸 수 있는 탈착(이동)형이 바람직하다.
- ⑦ 변기솔은 물받침대와 함께 벽걸이형으로 설치한다.
- ⑧ 양치질용 물컵은 유동식 걸쇠에 걸 수 있는 것이 좋다.
- ⑨ 수납선반은 별도의 선반보다는 카운터형 세면대의 좌우 여유면을 이용,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고 전기면도기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별도의 위치를 선정한다.

4) 기타 특수설비

- ① 전자감응식 수도꼭지
- ② 사용하는 물의 온도, 수량 등을 수도꼭지와 케이블로 연결된 조정기를 통해 조절하는 시스템도 있다. 이 경우 물의 온도가 벽에 매립된 표시창에 나타나며 세면대, 비데, 욕조, 샤워기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표시창에는 물이 흐르는 동안에만 온도가 표시된다.
- ③ 세면기 주변에 헤어드라이, 전기 면도기 등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걸쇠
- ④ 수건건조기는 방열기의 기능과 통합한 형태가 바람직하다.
- ⑤ 휠체어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빨래걸이는 특히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5) 비상호출기

- ① 모든 방에는 반드시 고정된 비상호출기 연결장치(전화기나 전자감응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② 필요시에는 무선 비상호출기를 이용한다. 호출기 이용자는 손목시계 형태나 목

걸이 형태의 비상호출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위급시 단추를 누르면 전화기에 연결되어 작동하는(요즘 흔히 이용되고 있는 무선호출기 '삐삐'와 같음) 비상신호가 구조대를 가동시키는 시스템으로 특히 상주 밀착간호가 없는 장애인에게 매우 유용하다.

- ③ 비상호출기는 자동전화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자동전화기에는 사전에 입력된 연결 전화번호와 미리 녹음된 메시지가 있어 비상호출과 함께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이 구난 메시지는 친척, 친구, 이웃 혹은 병원, 장애인을 위한 사회 자원봉사단체 등의 구급대에 즉시 전달되도록 한다.
- ④ 이 때 이 전화기는 첫 메시지가 송출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인터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현재 시중의 상당수 전화기는 이미 인터폰 겸용 기능이 완비되어 있다). 호출자가 위급상황에 있으므로 전화기에 다가가 수화기를 들지 않고도 위기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이 기기는 이외에도 출입문 개폐기능, 전화를 통한 가전제품 원격조정기능 등이 다양하게 통합될 수 있다.

4. 부엌공간

부엌은 주거시설의 심장이다. 가정주부(혹은 가사를 돌보는 남편)가 일상생활의 40% 이상에 해당되는 시간을 부엌에서 소비하고 이는 가족규모가 커지면 더욱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이 곳은 가족이 가장 길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며 서로의 문제를 털어놓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할은 연령이나 장애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지므로 부엌은 주거의 구심점이 된다.

이 주거의 심장부가 대부분 취약한 곳, 위험한 곳, 기능이 결여된 곳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가 없는 가정주부에게도 다양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면 장애나 행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는 위험한 장애물이 몇 배로 가중되는 셈이 될 것이다.

- ① 조리대(가열대), 작업대(준비대), 개수대 하부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반드시 완전히 비워둘 것. 이들의 높이는 반드시 사용자의 작업높이에 적합하도록 조절 가능해야 하고 휠체어가 개수대 아래로 자유롭게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배수구의 조절 등이 필요하다.

- ② 조리대, 작업대, 개수대는 가능하면 코너를 이용해 좌우로 배치한다.
- ③ 미끄럼 방지용은 청소하기 용이한 바닥마감재를 선택한다.
- ④ 냄새 여과용 마감재의 선정
- ⑤ 강제(기계)환기 시스템의 채택
- ⑥ 휠체어의 손잡이 높이 부분에는 스위치 등의 조작기를 두지 않는다. 이는 휠체어로 추돌하기 쉽고 서 있을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 ⑦ 부엌 구성품들은 강한 대비를 갖도록 디자인하며 특히 가열대 등 안전지대는 효과적인 인지가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1) 개수대

- ① 건조대가 달린 휠체어 접근용 개수대, 이때 건조대는 솔, 냄비 등 무거운 그릇을 개수대 속에 집어넣지 않고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② 개수대 속의 전면은 모서리 부분이 각이 지지 않고 가급적 원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③ 건조대 위에 놓인 솔 등 무거운 그릇을 씻기 위해 물을 채우려면 수도꼭지가 사위처럼 호스에 연결되어 있거나 좌우로 자유로이 이동가능하며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④ 개수기 아래부분에 찌꺼기 모음통을 설치한다.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치도 고려한다.

2) 작업대

- ① 휠체어 접근용 작업대는 전면에 흘러내림 방지턱이 있어야 작업대 위의 물건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면 우측으로 치우친 전면 일부는 보조탁자 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밀어서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방지턱을 두지 않는다.
- ② 조리한 음식이나 물건을 들어올리지 않고 좌우로 밀어서 옮길 수 있도록 작업대는 조리대, 개수대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도록 통판을 이용한다(예를 들면 개수대에서 끄집어내어 작업대를 거쳐 조리대 위에까지 연속적으로 솔 등을 밀어 옮길 수 있도록 처리).
- ③ 별도로 조도조정을 할 수 있는 직접조명을 작업대 위에 설치한다.
- ④ 자석 등을 이용한 솔, 냄비 등의 미끄러짐 방지장치 혹은 상부판의 일부를 마찰

력이 큰 재료로 마감처리

- ⑤ 접이 혹은 서랍식 도마, 작업대 상판 아래, 개수대 후면 등에 접이 혹은 서랍식으로 매립하여 앞으로 빼내어 사용하고 쓰레기는 모음통(또는 개수대)에 바로 들어가도록 처리한다.
- ⑥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주작업대는 가급적 큰 면적을 할애한다.

3) 개수대 - 작업대 - 조리대

- ① 전면 모서리에는 어떠한 조작기도 부착하지 않는다.
- ② 작업대를 벽면의 모서리 부분에 두고 좌우로 조리대와 개수대를 설치할 경우 좌우를 대각선으로 이은 작업대의 상부 코너부분은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조리용품의 수납공간으로 활용한다.
- ③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서 이 코너에 아래는 전자레인지, 상부는 수납장으로 된 전동식 오르내리장을 만들어 필요부분이 작업대 상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4) 조리대

- 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열판(끓이고자 하는 솥)의 위치에 음향적 혹은 형태적(가열판의 중앙위치에 약간 들어간 표시를 하여 수저 등으로 위치를 확인)인 표시를 한다.
- ② 특히 세라믹 가열판의 경우에는 작동 유무가 표시 등에 확실히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 표시등은 남은 열에 대한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켜져 있어야 한다.
- ③ 가열대 주변 상판은 열에 견딜 수 있는 재료여야 한다.
- ④ 모든 작동 조작기는 조작이 아주 단순해야 하고 반드시 가열대와 격리된 곳에 위치해야 한다.
- ⑤ 가열대 위에 조리 기구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소화되어야 한다.
- ⑥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열단계를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 있는 양각된 표시나 '딸각 딸각' 하는 음향표시기능을 첨가한다.
- ⑦ 과열 방지장치(자동 소화장치)
- ⑧ 강제 증기배기장치(Hood)
- ⑨ 디지털 표시는 절대 금물이다(특히 가열대 작동유무를 디지털로 표시하면 장애인들은 잘 판독하지 못한다).

⑩ 가열대 뒷편에 조절용 조작기의 부착은 절대 금물이다.

- ⑪ 가열대 윗면에 먼 곳에서도 가열대에서 조리중인 솥, 냄비 등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리방지용 거울을 달면 매우 유용하다
- ⑫ 장애인들은 대부분 하이테크(High-Tech ; Computer)에 애로를 느낀다. 따라서 기구 선택시에는 조작이 가장 단순한 것을 선택하고 자동기기는 수동으로의 전환사용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⑬ 각각의 조작기에 점자를 추가로 표시해 두면 매우 유용하다.
- ⑭ 모든 손으로 조작하는 조작기에 추가로 눈에 확연히 띄는 표시와 양각된 표시를 한다.

5) 저장, 냉장, 냉동고

- ① 얇은 자세에서 이용 가능하고, 서랍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
- ② 상부장은 필요시에만 설치하고 개별주문에 의해서만 상하 이동용으로 설치한다.
- ③ 전동 상하 이동식 상부장은 개별주문이 있을 때만 설치한다.
- ④ 포장되지 않았거나 낱알 상태로 산 식료품(예, 쌀 등 곡류)은 하부장에 수납하도록 한다.
- 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통의 설치
- ⑥ 환불용 병 등의 분리수거통 설치
- ⑦ 사용빈도가 높아 매일 혹은 자주 반복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수납한다.
- ⑧ 레일에 고정되지 않은 바퀴 달린 하부장은 추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식기세척기는 그릇을 넣고 꺼내기 쉽게 완전히 서랍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며 물건을 쌓는 위치가 바닥으로부터 높이 30~40cm 이상을 반드시 유지한다.

6)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부엌 내에서 가장 우선 확보해야 할 시설이다. 휠체어 위에서 끓는 음식을 추가로 손에 들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의 위험요소가 항상 있기 때문이다.

- ① 모든 조리용 전기제품은 자동 꺼짐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끄는 것을 잊었을 경우 자동으로 절연되도록 한다.

- ② 반드시 강력한 기계식 급·배기시설을 한다.
- ③ 강제 급·배기 기능을 전제로한 기기(예 : 가스 보일러)를 부엌 내에 설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④ 보일러, 온수기 또는 표면온도가 25℃를 상회하는 기계설비를 부엌 내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기계의 경고신호(정전, 과열, 산소결핍, 누출, 각종 기능정지 등)는 반드시 부엌의 어느 곳에서나 음향적, 시각적으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온도팽창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 ⑦ 부엌가구 전면의 활동공간은 반드시 항상 장애물 없이(끓는 음식을 떨어뜨렸을 때 등의 대피를 위하여) 비어 있어야 한다.
- ⑧ 활동공간 내로 내미는 부엌가구의 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열려 있는 문이 시각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서랍식, 접이식 혹은 주름문의 형태가 좋다.

7) 탁자

다양한 형태의 탁자가 가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많은 이러한 탁자들은 장식적인 효과도 있고 거주자의 개인 취향에 따른 결정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몇몇 탁자의 형태나 유형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단한 위험을 내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탁자의 가장자리 밖으로 비스듬히 내민 다리를 가진 탁자의 경우에는 자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 ① 휠체어의 접근을 위하여 탁자상판 아래면까지의 유효높이는 최소 69cm가 되어야 한다.
- ② 날카로운 모서리와 면, 4.5cm 이상되는 상판하부 덧판이 있어서는 안된다.
- ③ 비스듬히 경사진 다리는 피한다.
- ④ 아래가 빈 작업용 탁자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는 최소폭 150cm, 기타 이용자는 최소폭 120cm가 소요된다.
- ⑤ 이 탁자들은 넘어지거나 흔들거리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상판은 청소가 용이해야 한다.

8) 기타 사항

- ① 필요시 실명한 가정주부를 위한 녹음기를 설치한다. 이는 요리법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

- ② 초인종, 전화, 무단침입 경보 등을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기위한 점멸표시 등 가능하면 비디오폰과 병행하여 설치한다.
- ③ 다른 방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는 음향감지기

5. 접근로

여기서 접근로라 함은 시설로 직접 연결되는 길을 의미한다. 모든 접근로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공간'이어야 한다. '모두'의 의미 속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물론 그들을 방문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 ① 접근로는 반드시 턱과 단이 없어야 한다
- ② 접근로는 반드시 건물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0cm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소 120cm보다 좁아서는 안 된다. 특히 휠체어 사용자가 유모차를 밀고 오는 주부와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행가능한 접근로의 넓이를 확보해야 한다.
- ③ 접근로는 측면 경사가 없어야 한다.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에 직교되는 면으로의 경사는 휠체어의 전복 가능성은 물론 기타 보행장애인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 ④ 진행방향으로 있는 경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경사도는 6% 혹은 16분의 1을 초과하지 말고 전체 길이가 6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출입구 부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사로를 설치할 때에는 시작과 끝부분에 반드시 150cm×150cm의 수평정지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접근로 측면에 높이 차이가 있을 때는 휠체어의 바퀴나 기타 보행장애인의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10cm 이상의 미끄럼 방지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접근로의 표면은 평활해야 하고 장애가 되는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갈 때 덜컹거리지 않아야 하고 목발이나 지팡이가 끼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굵은 날에 웅덩이가 형성되거나 겨울철에 빙판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
- ⑥ 접근로에서 대문, 현관문에 이르는 연결로도 턱이 없어야 한다.

1) 승강기

'무장애 공간' 건축을 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부분이 승강기이다. 승강기는 수직이동을 위한 수단이고 이 방법으로 수직동선이 해결되면 누구나 모든 층에 선택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든 층을 누구나 턱이나 단차 등의 장애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경우 귀결되는 한 가지 유일한 최선책이 승강기이다. 이 해법에 기술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다. 다만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에는 상당한 액수의 설치 및 운용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① 다층 건물에는 충분한 크기의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향후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② 승강기의 내부 규모는 최소한 안목치수 기준으로 폭 110cm, 깊이 140cm를 유지해야 하고 출입문의 유효 통과폭은 90cm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승강기 내부 좌우측벽 중 한 편에 승강기 조작판을 설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손잡이를 높이 80cm~100cm 위치에 설치한다.
- ④ 승강기 출입문 반대편 벽면에 상황분석용 거울의 부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휠체어 사용자는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이 불가능하므로 타고 내릴 때 거울을 통해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조작기는 중간부분까지의 높이가 85cm가 되도록 하고 측면벽 모서리에서부터 최소한 50c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또한 조작기의 숫자배열은 수평으로 한다.
- ⑥ 조작기의 글씨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양각으로 표시하고 글씨의 크기는 최소 2cm~3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⑦ 가능하면 모든 승강기는 음성안내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 ⑧ 승강기 호출 버튼은 접근 장애가 없는 위치에 85cm 높이로 설치한다.
- ⑨ 승강기의 출입문은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하되 통과하는 순간에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전자감응장치는 출입문틀에 바닥으로부터 각각 25cm와 75cm 높이에 설치한다.
- ⑩ 승강기 앞부분은 최소한 150cm×150cm의 회전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⑪ 이 회전공간에 바로 면해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할 경우 최소한 계단폭만큼 비켜난 위치에서부터 내려가는 단이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2) 경사로

경사로는 경미한 단 차이를 극복할 때만 권장할 수 있다. 즉 최대 경사도 6%(국내 건축법으로는 12.5%까지 허용)에 6m 길이의 경사로를 설치하면 36cm의 단높이를 극복할 수 있다. 연속하여 이 길이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회 반복되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150cm 각의 경사로참을 두는 것을 감안할 때 경사로의 총 길이는 16.50m가 되고 오르는 높이는 불과 72cm 밖에 되지 않는다.

급경사 경사로는 어떠한 종류라도 주택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휠체어의 전복위험은 이미 8~9%의 경사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발판의 위치가 높이가 조정된 어린이나 왜소한 체형의 휠체어 사용자는 체중의 중심이 위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급경사도에서의 전복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① 경사로는 곡선이나 원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항상 직선과 직각으로 이어지고 방향전환점에는 반드시 수평 경사로참을 둔다.
- ② 경사로의 경사도는 6%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연속길이 6m 이하로 한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에는 반드시 150cm×150cm의 참을 설치한다.
- ③ 보다 길이가 긴 경사로의 경우에는 매 6m마다 중간참을 설치하되 1회 이상 반복하여 경사로가 연속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 ④ 경사로의 측면에는 휠체어의 이탈을 막기 위한 높이 10cm의 방지턱이 있어야 하고 높이 85cm의 핸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한다.
- ⑤ 이탈 방지턱 및 핸드레일 상호간의 안목치수 간격은 120c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⑥ 경사로의 바닥마감재는 요철면으로 인하여 보행불편이나 휠체어 주행시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결빙, 적설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수하게 개발된 바닥마감재가 많으므로 선택시 고려한다.

경사로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판단이다. 많은 사람에게 경사로가 계단보다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경사진 면으로 걷는 것이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의족이용자나 계속 오르내림을 반복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경사로는 반드시 계단과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계단

계단은 건축공간의 많은 부분을 접근 불가능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

제한 수도 없다. 그러나 계단을 장식의 한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서는 안된다. 현대의 건축물을 모두를 위한 '무장애 공간' 생활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이다. 만약 장식적 요소로써의 계단과 턱과 단이 없는 공간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장애 공간'이 최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 ① 건물의 접근로는 근본적으로 항상 단차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 ②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은 반드시 최소 150cm 폭의 참이 있어야 한다.
- ③ 최상부 계단의 디딤판은 참의 유효폭에 산정하지 않는다.
- ④ 계단의 안목치수 유효폭은 120cm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 ⑤ 원형계단은 가급적 피한다.
- ⑥ 계단의 양측 핸드레일의 직경은 3cm~4.5cm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⑦ 핸드레일의 형태가 움켜잡을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형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직경은 3cm~4.5cm와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 ⑧ 핸드레일은 계단 시작과 끝지점의 수평으로 30cm 이상 계속 연장되게 처리하고 계단참 등에서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연속되도록 한다.
- ⑨ 층 표시는 핸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에 양각으로 설치한다.
- ⑩ 디딤판의 조명은 철판과의 모서리가 뚜렷이 구분되도록 처리한다.
- ⑪ 타이머가 부착된 계단실 조명의 소등시간 간격은 고령자의 보행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설정한다.
- ⑫ 계단의 디딤판은 추가로 채색을 하거나 별도의 표시를 하여 눈슬립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하고 계단 이외의 바닥면 마감재와 질감 차이가 나도록 조치한다.

단지 내의 공동시설 역시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무장애 공간' 이어야 한다. 모든 이용자는 단지 내 어떤 시설이든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건물 외부의 건물 사이에 나 있는 통행로는 최소 150cm 폭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외부에 만들어진 단지 내 모든 통행로가 반드시 최소 150cm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공공시설 지역 내에서 고려해야 하는지를 한번쯤은 되짚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공동쓰레기 투기시설인 쓰레기 콘테이너의 쓰레기 투입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 만들어져 있다든지 뚜껑을 손쉽게 여닫을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는 일상생활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4) 쓰레기통

- ① 쓰레기통은 단차없이 자유로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② 쓰레기통 전면에는 반드시 최소 150cm×150cm의 수평 정지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쓰레기통은 반드시 휠체어에 앉은 높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 ④ 건물 외부의 보행로 최소폭은 150cm를 유지해야 하고 바닥마감재는 3.2항에서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⑤ 쓰레기 투입구의 높이는 85cm를 유지해야 한다.

5) 우체통

우체통 역시 일반 보행인은 물론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 및 이용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전면은 최소 150cm 폭의 수평정지면의 확보가 요구된다.

6) 주차장 및 차고

- ① 건물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최소 3%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되어야 하고 주차한 자동차와 나란히 추가로 150cm 폭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추가로 확보 요구한 통로의 폭은 차고 계획시에도 적용된다.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넓은 장애인용 주차장 및 차고는 장애인이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 놓을 필요가 있다. 주택에서 상당히 많은 휠체어 사용자는 자동차에 탑승한 후 옥내용 휠체어를 그 자리에 두고 옥외 도로용 휠체어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의 출입문을 직각에 가깝도록 열지 못하면 승하차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반드시 개인 지정석이 아니라도 방문객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내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 ③ 주차빌딩의 경우에도 턱과 단차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 ④ 공동시설 공간 내에서의 방화문은 반드시 자동개폐가 되어야 하되 자재문은 절대 피한다.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문의 뒷편에 다른 사람이 막고 서지 않도록 계획한다.
- ⑤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주거 내 통로의 폭은 반드시 120cm 폭의 안목치수를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

금기정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I. 교통약자의 정의 및 사회적 의미
- II.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교통관련) 검토
- III. 의식조사를 통한 장애인의 특성분석
- IV. 장애인과 교통정보
- V. 장애인의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운송체계(STS)
- VI. 교통분야와 관련된 장애인복지법의 향후 검토내용
- VII. 결론

I. 교통약자의 정의 및 사회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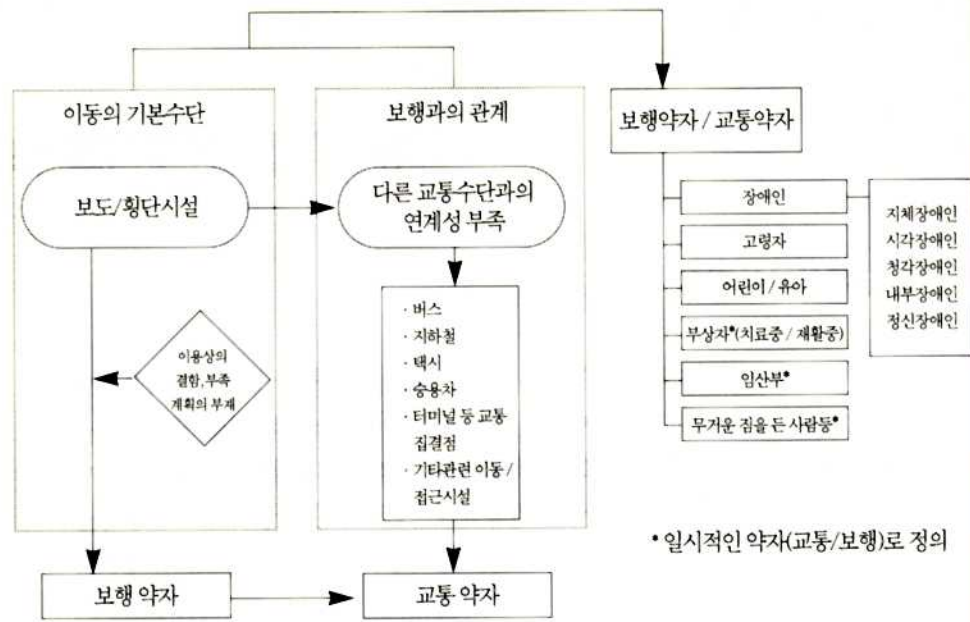
1. 교통약자의 정의

장애인은 자율적 의지와 자력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러한 장애는 원인이나 그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교통분야에서는 고령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교통약자'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약자는 신체적인 장애나 고령으로 인한 종합적 기능장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재활상태 등 일시적(또는 단기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동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자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또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제한은 그 양상을 달리함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장애를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등 이동에 따른 장애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그 정도가 상이함으로 각종의 이동 및 장애특성 그리고 그 정도에 따른 교통약자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장애인의 이동문제 즉 교통환경 분야에서 이동에 따른 장애인의 일반적 사항과 함께 불편사항을 분석·파악하고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된 제반 관련법을 검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 장애인의 이동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운송체계(STS: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의 현황을 소개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사전정보의 제공체계 등 이동 장애를 완화하고 증진할 수 있는 미래적인 발전 방향의 제시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따라 각종 이동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이에 따른 이동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환경의 쾌적성 증진 등 교통분야 전반에 걸친 사회복지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 교통약자의 정의 및 분류

2. 장애인을 위한 교통대응의 사회적 의의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가운데 교통(이동)측면에서 보는 사회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지금까지 교통분야에서 대상으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의 이동에 관한 기본권리의 확보 및 증진을 계기로 이동제한의 완화 및 개선에 따른 교통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지면 경제적 자립의 자원과 사회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리고 사회복지포함한 사회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폭넓은 분야에 걸친 개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동에 관한 기본권리의 확보 및 증진

이동은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한 개인의 고유기능이며, 사회는 각 개인의 이동과 이동에 따른 제반활동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이동의 권한을 확보하고 증진

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이 갖는 고유의 권한을 확보함은 물론 나아가 사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2) 교통의 사회적 역할 충실

교통은 이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써 교통이 갖는 사회적 기능은 매우 크다. 즉,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시설은 통신과 교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기능이 원활히 제공되고, 활용되고 있는 사회는 기본적 기능에 충실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동(외출)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는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56.4%)과 편의시설의 부족(54.3%) 등 그 대부분이 신체적 장애와 이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상의 제약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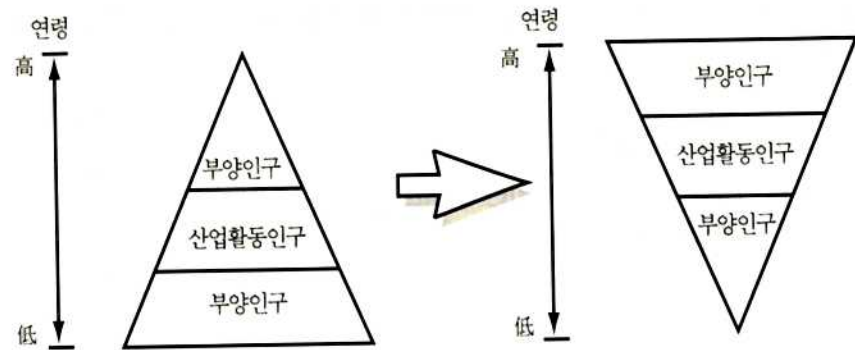
<표 1> 이동(외출)에 따른 불편 요인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주위사람들의 시선	편의시설 부족	지리를 몰라서	불친절	다항선택
						외출경험이 없다
비율(%)(복수회답)	56.4	18.1	54.3	14.4	8.5	2.1

3) 경제적 자립의 지원

취업활동은 한 개인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직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사회의 기본적 문제는 결국 고용이나 생산활동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활동창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자신의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의 사회문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즉 고용활동인구의 감소는 출생률이 감소하고 고령자나 2차적 재해로 인하여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산업활동 인구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켜 복지사회로 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이동근로자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4)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현대 사회의 장애인은 예방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선천적 장애의 비율이 매우 낮고 그 대부분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2차적 재해로 장애원인의 구성 비율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중경상자는 매년 40~50만 명 정도로 이들의 상당수는 치료 후 영구장애를 갖는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정확한 집계는 없음).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자 비율의 증가로 교통약자의 증가도 경시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 2차 재해로 인한 장애인과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자의 급증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조속한 대응책의 강구는 이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이동)측면에서의 대책으로 유의한 의미를 갖는다.

5) 사회복지 측면의 내실화

산업화에 따른 소득증대와 이로 인한 사회복지의 충실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단계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가운데 재정적 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정책 이외에도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이동)분야의 계획과 정비도 사회복지를 내실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자 할 수 있다.

6) 사회환경의 질적 향상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교통분야의 대응과 대책의 강구는 사회

환경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인이자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보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편견(50.0%)이나 이동의 부자유(29.3%), 교육의 부족(11.2%) 순으로 파악되어 이동장애에 의한 요인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현재의 교통시설이나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교통약자의 평가에 있어서도 절대 다수의 장애인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강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같이 장애인의 이동문제에 관한 사회적 의미는 장애인 자신의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 장애인이 현재의 이동에 많은 불편을 지적하고 또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고조와 함께 장애인의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표 2> 장애인의 사회참여 장애에 관한 요인

	교육부족	이동상 제약	사회편견	자신의 장애	기타
비율(%)	11.2	29.3	50.0	7.4	2.1

<표 3>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의견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부족	매우 부족
비율(%)	0.5	1.1	8.0	37.2	53.2

II.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교통관련) 검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법에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통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 설비 등을 배려·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세부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교통시설물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여객취급역, 공항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대합실 및 통로, 정류장, 매표소, 개찰구, 승강장, 장애인용 좌석 및 차량,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그밖에 장애인용 주차장과 유도로, 유도신호장치로 규정하고 각각의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즉, 동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공기관, 종합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정비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형식에 그치는 시설물이 많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 대수의 1%에 해당하는 공간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는 곳과 설치를 했어도 관리부족으로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 이용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또 유도블록의 경우도 방향을 안내해 주는 선형블록과 위험감지용 점형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용도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설치대상 범위 또한 비현실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까지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증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특성과악에 따른 적절한 분류와 그 분류에 따른 이동장애 특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장애별 특성을 감안한 설계기준과 함께 교통편의 시설물의 개발 및 관리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표 4>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규칙

항 목	설 치 기 준	
장애 인 전 용 주 차 장	일반 사항	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대상건축물에는 당해 시설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②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함.
	주차장 공간	① 주차대수 1대당 너비 3.3m 이상, 길이 5m 이상. ② 주차공간에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 바닥면의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음. ③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함.
	설치 장소	① 주요출입구,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함. ②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함. ③ 주차장에서 건물까지의 통로에 단차를 없애고,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폭 1.2m이상의 안전통로를 설치해야 함.
	유도 및 표시	① 주차장 바닥면은 장애인용 주차장 전용 표시를 함. ②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③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
유 도 로 · 유 도 신 호 장 치	유도 블록	① 시각장애인을 유도하기 위한 바닥재로는 유도용 선형블록과 감지용 점형블록을 사용(바닥재 크기 0.3m×0.3m 이상). ② 바닥재 표면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 ③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 ④ 점형블록은 굴절부, 단차부분, 위험장소의 0.3m 전면에 부설. ⑤ 실내 주요 방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각 실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그리고 복도폭 2/3 이상에 선형유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음.
	돌출 폭	① 통로 바닥면에서 0.6m에서 2.0m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m이하로 할 수 있음. ② 통로 바닥면에서 0.6m에서 2.0m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m 이하로 할 수 있음. ③ 통로상부는 바닥면에서 2.0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해야 함.
	유도 신호 장치	① 해당 시설물의 주출입구 위쪽에 설치할 수 있음. ②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음향·시간·음색 등을 고려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착용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만 벨이 울리는 전자식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③ 시설의 배치가 복잡할 경우 출입구 부근에 시설배치를 나타내는 점자안내판 및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음.